

2024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신입생 안내 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목표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기초 및 임상의학분야는 물론 기타 관련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날로 증가하는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연구 결과를 비판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기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접근 방법 및 자료 분석 능력을 갖추므로써 제기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의학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의학 발전을 꾀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태도와 사명감을 발휘하여야 한다.

목 차

■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일정표	1
----------------------------	---

I.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 소개	3
------------------------------	---

1. 개관	5
2. 대학원학사위원회	6
3. 대학원 교육 목표 해설	6
4. 의과대학 대학원 현황	7

II. 대학원 신입생 학사 관리 안내	9
----------------------------	---

1. 등록	11
2. 수강신청	12
3. 지도교수 선정 및 선정절차	13
4. 박사과정 교과학점 통산인정	13
5. 수료 이수기준	14
6. 휴·복학 안내	14
7. 군 복무자(군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대학원 취학	15
8. 석·박통합과정의 박사과정 인정 및 포기	16
9. 수료생의 연구생 등록	16
10. 안전환경 교육	17
11.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18
12.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19

Ⅲ. 수강신청 21

□ 의학과, 협동과정

- 1.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25
- 2. 공통필수 교과목(연구윤리) 안내 31
- 3. 공통과목(Common Subjects) 안내 32
- 4. 의학과, 협동과정 수료 요건 자가 점검 리스트 40

□ 의과학과

- 5.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45

□ 임상 의과학과

- 6.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상 의과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55

□ 휴먼시스템의학과

- 7. 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63

□ 의료기기산업학과

-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71

□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 9. 서울대학교 대학원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수강과목 신청기준 77

목 차

IV. 논문제출자격시험	83
1. 시행근거	85
2. 응시자격	85
3.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기준	86
4.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안내	87
5. 신청 절차	88
V. 학위논문심사	89
1. 논문심사 주요 절차	91
2. 연구윤리 준수	100
3. 연구생 등록	100
4. 이학 석·박사 학위 수여 제도	101
5. 의과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운영규정	102
VI. 장학·연건생활관(기숙사)·기타 학생 생활	109
1. 장학제도	111
2. 연건학생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113
3. 연건생활관(기숙사) 입주자 선발	116
4. 학생증(S-CARD) 발급	117
5. 학생건강검진 실시 및 연건분소 안내	118
6. 증명서 발급	119
7. Pre D-Day X SNU Medicine 행사	120
8. 의과대학 내 주요 연락처	121

VII. 관련규정 123

1.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국·영문) 125
2. 서울대학교 윤규윤리 지침 148
3.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164

2024학년도 학사일정표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4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본과 개강 3.4. (1학년) 2.5. (2학년) 1.22. (3학년) 1.22. (4학년)																																																																																																																																																																																																																																																																																																																																																																																																																																																																																																																																																																																																																																																																																																																																																																																																																																																																																																																																																																	
		제1학기 시작		▲ 제1학기 개강																																																수업일수 1/4선		제2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삼일절		2024학년도 제2학기 교과목 수요조사																																																																																																																																																																																																																																																																																																																																																																																																																																																																																																																																																																																																																																																																																																																																																																																																																																																																																																																																																																																																																													

★ 모든 학사관련 안내사항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medicine.snu.ac.kr>)
[대학소식] → [공지사항]에 공지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 소개



I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 소개

1 개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개교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교육, 연구, 진료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수한 영재들이 입학하여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및 생명과학자로서 사명감을 안고 학구열을 불태워 왔으며, 진지한 학업풍토 속에서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은 의학교육, 연구, 진료, 보건 행정 등 사회 각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교의 교수 및 연구진은 국내 의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학술활동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중양의료 기관인 동시에 본교생과 졸업생들의 임상수련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 병원의 의료진으로도 활약하면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연구, 진료, 봉사의 복합적 학문 기반 위에서 본 대학은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진, 학생, 졸업생들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21세기의 세계적 인간생명과학교육 및 연구센터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졸업생 수를 보면, 1947년도 제1회 졸업부터 2023년도 제77회 전기 졸업까지 의과대학 의학사졸업생은 11,043명(남 9,403명, 여 1,640명), 의무석사 학위취득자는 405명(남 206명, 여 199명), 의학석사 학위취득자는 5,972명(남 4,537명, 여 1,435명), 의학박사 학위취득자는 5,322명(남 4,154명, 여 1,168명)이다. 2024학년도 기준 의학과, 의과학과, 임상 의과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해부학교실 등 36개 교실 및 4개의 협동과정, 간연구소, 암연구소,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 4개의 법정연구소, 그리고 인구의학연구소를 포함하여 17개의 연구소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직할 의학연구원이 있다. 학사행정기구로는 학장을 중심으로 교무, 학생, 연구, 기획 분야를 담당하는 부학장과 대학원학사실장, 의학교육실장, 분당교학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입학정책실장, 비전추진단장, 건강사회개발원장 그리고 부학장을 보좌하는 담당교수 60여명과 서무행정실, 시설행정실, 교무행정실, 대학원학사행정실, 학생행정실, 연구행정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실, 입학지원실, 의학교육실 그리고 교육전문기구로서 의학교육연수원이 있으며, 부속지원기구로는 의학도서관, 연건학생생활관, 의생명동물자원 연구센터, 실험동물실, 종합실습실, 중앙연구지원실, 연구안전관리실 등이 있다. 대학의 심의 및 자문기구로는 상임위원회 9개 및 운영위원회 6개 등으로 구성된 19개의 위원회가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2024년 1월 기준 481명의 전임교수(교수 382명, 부교수 76명, 조교수 23명)와 64명의 기금교수(기금교수 28명, 기금부교수 28명, 기금조교수 8명)가 재직하고 있다. 조교는 전임 조교 17명이 있다. 학생은 2023년 기준으로 학부생 및 의학대학원생이 856명, 대학원생이 석사와 정 251명, 박사과정 656명으로 전체 학생 수는 1,763명에 이르고 있다.

2

대학원학사위원회

대학원 학사 관리는 대학원학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의되고 결정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학장이 임명한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①대학원 입학과 수료 ②대학원 과정의 연한 ③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신설 및 변경포함) ④대학원 학생지도 ⑤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심사제도 운영 ⑥위탁교육 ⑦협동과정의 개설과 운영 ⑧대학원생 우수논문 지원대상자 선정 ⑨정원 외 특례입학에 관한 사항 ⑩기타 대학원 과정 활성화 방안 등이다.

3

대학원 교육 목표 해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 교육목표는 1984년 제정되었으며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자로서의 유능한 수행능력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 의학 및 관련 학문 연구자로서의 기능적 측면

연구자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다. 우선 기존의 지식 및 연구결과를 분석 비판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의 도출뿐 아니라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까지도 지닐 것을 이수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가설의 설정, 설정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접근 방법, 합리적 실험수기를 사용한 연구 수행능력 및 얻어진 연구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지니도록 교육목표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의학자 또는 의학교육자로서의 잠재적 측면

우리 대학원 의학과 졸업자의 많은 수가 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 졸업생은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 잠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 교육자의 역할이 자기 계발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의학지식을 흡수하고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가치관 및 태도에 관련한 윤리적 측면

의학자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박애정신, 지성,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학이 인간 사랑을 통한 인류의 건강 추구하고 복지향상이라는 박애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덕목의 함양이 연구기능 및 교육기능의 습득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대학원 의학과 교육목표는 강조하고 있다.

4

의과대학 대학원 현황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	기초의학전공 해부학, 병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열대의학, 인문의학, 법의학, 의료관리학, 의공학 중개의학전공 임상의학전공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정형외과학, 흉부외과학, 비뇨의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 성형외과학, 방사선종양학, 검사의학, 재활의학, 핵의학, 가정의학, 응급의학
	의과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임상의과학과(계약학과)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협동과정 (의과대학 주관)	종양생물학 임상약리학 의료정보학 줄기세포생물학

* 2024학년도 기준

II

대학원 신입생 학사 관리 안내



II — 대학원 신입생 학사 관리 안내

1 등록

1) 등록금 납부 안내

- 1학기는 2월 초, 2학기는 8월 초에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2) 수납기간

- 1학기는 2월 중순 경, 2학기는 8월 초순 경

3) 추가 등록 및 분납 안내

- 의과대학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공지 시 함께 안내

4) 고지서출력

- 마이스누 포털(<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등록」 → 「고지서출력」 또는 학교홈페이지(<https://shine.snu.ac.kr/gojiseoindex.html>)

5) 납부방법

- ① 고지서상 학생별 가상계좌 이체
- ② 은행창구 납부
- ③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홈페이지 및 ATM기기에서 '등록금납부' 메뉴 이용
- ④ 신용카드(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만 가능하며, 창구 납부)
- ⑤ 학생회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6) 등록금 납부확인

- 포털마이스누 개인정보에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문자서비스 전송 또는 포털마이스누 내 증명서 발급의 교육비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 가능

2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안내

- 매 학년도 1월 중순, 7월 중순 경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2) 수강신청

- 1학기는 1월 말, 2학기는 8월 초순 경

3)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사이트(<http://sugang.snu.ac.kr>)에서 신청
 - ※ 학번 및 비밀번호: 학번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4) 개설교과목 확인

- 개설 교과목은 매 학기 달라지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대학원 개설교과목 리스트(엑셀파일)를 확인

5) 수강신청 변경

- 개강 후 1주 이내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변경

6)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 수업일수 2/4선까지 포털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
- 포털 mySNU(<http://my.snu.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 → 과목선택 → 취소사유 입력 → 저장 → 신청
- 담당교원 온라인 승인 후 취소가 완료됨
(담당교원의 의사에 따라 취소 승인 전 SMS 또는 E-mail로 사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수강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담당교원 승인 이후 수강취소 반복 불가

3 지도교수 선정 및 선정절차

1) 지도교수 신청서 제출시기

- 매 학년도 3월 초, 9월 초

2) 지도교수 선정 절차

- 학생이 전공교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가 지도교수 선정안을 작성하여 대학원 학사행정실로 제출

3) 지도교수 자격

- ① 학생이 소속된 학과(전공)의 전임교원, 겸무교수, 기금교원
- ②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기금조교수 포함) 이상으로 함
- ③ 협동과정 학생은 해당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겸무교수 및 기금교원으로 함
- ④ 의과학과 소속 또는 중개의학전공 겸무 교원은 해당 과 또는 전공의 지도학생만 받을 수 있음

4 박사과정 교과학점 통산인정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되는 바,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 중 석사 수료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을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교 석사 졸업자는 신청 불가).

2)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3) 의과대학 내 타 학과 박사 진학 시, 유사전공으로 인정 받을 경우 통산인정 가능하다.

- 의학과 석사 학점 → 의학과 박사 (○), 의과학과/임상의과학과 박사 (△)
- 의과학과 석사 학점 → 의과학과 박사 (○), 의학과/임상의과학과 박사 (△)
- 임상의과학과 석사 학점 → 임상의과학과 박사 (○), 의학과/의과학과 박사 (△)

* △ :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석사-박사 전공을 유사 전공으로 인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만 통산인정 처리 가능

4) 신청절차

- 기간 : 매 학년도 3월 초, 9월 초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방법 :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학점인정신청」

5

수료 이수기준

구 분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등록횟수
석 사	24학점 (총 이수학점 내 세부 수료기준은 학과마다 상이)	3.0 이상	4회 이상
박 사	36학점 (총 이수학점 내 세부 수료기준은 학과마다 상이)	3.0 이상	4회 이상
통 합	60학점 (총 이수학점 내 세부 수료기준은 학과마다 상이)	3.0 이상	6회 이상

※ 단, 통합과정의 경우 학칙 상 수업연한이 8개 학기로써, 6번째 학기에 수료하지 못한 경우 7, 8번째 학기에 수강 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전액 부과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휴·복학 안내

1) 휴·복학 신청기간: 매 학기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미등록 휴학 : 수업주수 1/4선까지
- 등록 후 휴학 : 수업주수 2/4선까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휴학 처리 후 등록은 불가).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휴·복학 신청절차

-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개인정보 → 휴복학 신청 →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날인을 받아 휴학 종류별로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로 제출(신청서 미제출시 휴·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3)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 ※ 휴학연한 : 석사과정 4학기 / 박사과정 6학기 / 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는 산입 제외]

4) 이중학적 금지

- 학칙 제70조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7

군 복무자(군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대학원 취학

1) 군 복무자가 기관장의 취학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의 입학 또는 복학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

2) 제출서류

- 복학 또는 입학 시 : 기관장 취학승인서 1부
- 군 복학(귀)생 구비서류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8

석·박통합과정의 박사과정 인정 및 포기

1) 박사과정 인정

-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2) 통합과정 포기

-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 가능
- 방법 :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9

수료생의 연구생 등록

1) 대상자

-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 중 해당 학기에 학교 제반시설(도서관, 실험실습실, 전산원, 대학원연구실 등)을 이용하거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 ※ 연구생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 신청 불가

- 강의연구지원 장학생 또는 근로장학생: 1차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 수료 후 BK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필히 대학원 연구생 등록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전문연구요원 복무자 대학원연구생 등록 권장
(수료생 신분으로 학교 시설 사용 및 보험 등의 혜택)

2) 납부안내

- 1학기는 2월초 경, 2학기는 8월초 경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3) 납부금액

- 학기당 200,000원

4) 고지서 출력

-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등록 → 고지서 조회 → 연구생부담금고지서 선택 출력
- 또는 학교 홈페이지(<https://shine.snu.ac.kr/gojiseoindex.html>)

5) 납부방법

- 전산 출력된 납부 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10 연구실 안전환경 교육

1) 연구실 안전환경 신규교육

(1) 대상자

- 의과대학 대학원 신입생

(2) 신청일자

- 상반기(매년 1월말~2월초), 하반기(매년 7월말~8월초) 각 교실 전체공지(공문발송)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게시

(3) 교육일자

- 상반기(매년 2월), 하반기(매년 8월) / 매년 2회 실시

(4) 신청방법

- mySNU 포털 로그인 → 상단 메뉴의 학술연구(또는 연구지원) → 연구안전(SAFE) 또는 직접 입력(<http://rsis.snu.ac.kr>) → 안전교육 → 집합교육

(5) 유의사항

- 연구실안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으로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의 법정 필수교육
- 안전환경교육 미 수료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므로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 시 안전환경 신규교육 수료증 사본을 필수 제출**(수료증 분실 시 개별출력 가능)
- 미 수료 시 연구실(실험실) 출입 제한
- 개인별 일정에 따라 관악/연건 교육장 선택 가능
- 신규교육 수료 후 다음 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 정기교육(온라인) 이수

2) 연구실 안전환경 정기교육

(1) 대상자

- 의과대학 대학원생 중 이전 학기에 연구실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
- 신규교육 수료 후 다음 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 정기교육(온라인) 이수

(2) 신청일자

- 각 교실 전체공지(공문발송)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지

(3) 교육일자

- 상반기(매년 3월 초 ~ 8월 말), 하반기(매년 9월 초 ~ 다음 연도 1월 말)

11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1) 대상

- 학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내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3) 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시스템인 서울대학교인권센터(<http://helplms.snu.ac.kr>) 접속 후 마이 SNU포털 아이디 로그인

4) 이수알림

- 구성원별 순차 팝업 알림창 오픈

5) 문의

- 02-880-2421, hrcedu@snu.ac.kr

12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1) 대상

- 대학원 신입생 및 BK21 참여 대학원생, 교육수강 희망자 등

2) 내용

- 본 교육은 의과대학 대학원생으로서 이수해야 하는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입니다.

3) 수강기간

- 상반기(매년 3월), 하반기(매년 9월)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4) 수강방법

- eTL SNUON접속(<http://etl.snu.ac.kr/snuon>) →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연구윤리' 또는 'ethics' 검색 → 계열에 맞는 강좌 수강신청 → 수강(약 3시간 소요)
 ※ 유의사항 : 의과대학 대학원생은 본 교육과 별개로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함

5) 이수확인

- 모든 동영상 100% 수강 및 학습자료 열람시 이수 인정되며, 수강자 본인이 이수증 출력 가능

6) 문의

- 02-880-2072

III

수강신청



의 학 과

(Department of Medicine)

협 동 과 정

(Interdisciplinary Programs)



Ⅲ — 수강신청

1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대학원 의학과 및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강좌가 21개의 공통과목과 각 전공별교과목 500여 개 설정되어 있다. 전공별 교과목은 38개 전공별로 10~25개의 교과목이 있는데 이들이 매 학기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로 각 전공마다 1~2개씩 순환하며 개설된다. 개설교과목은 매 학기 달라지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시 확인해야 하며, 석사학위를 포함하여 전에 수강했던 과목을 다시 들으면 수강 학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 신청학점 : 12학점까지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참고) ~2020년 2학기까지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자에 한해 해당 학기에 1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학 첫 학기에는 9학점만 신청 가능 (단, 본교 의과대학 석사 졸업 후 박사 입학생의 경우 석사 누적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경우 첫 학기에도 12학점 신청 가능)
- 해당 요건 미충족한 경우,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수료 사정 시 해당 학점은 제외됨

2) 수강과목

(1) 과정별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총 이수학점	연구윤리	공통과목	전공과목	대학원 논문연구	잔여학점
석 사	24	3	6	6	6	3
박 사	36	3	6	9	12	6
통 합	60	3	12	15	18	12

(2) 연구 윤리

- ①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를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 ② 석·박사 재학 중 수강한 '연구윤리(990.501A)*',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은 중복(동일한)과목으로 인정하여, 중복이수 시 수료학점에서 제외된다.

(3) 공통과목

약 21개의 공통과목이 매 학기 순환하여 개설되며, 석사 6학점, 박사 6학점, 통합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전공과목

- ① 이수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에서 대학원논문연구 학점과 공통과목 학점을 뺀 학점의 50% 이상(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5학점)을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예) 의학과 내과학 전공자: 내과학전공 개설 교과목 수강 → 전공과목 인정
외과학전공 개설 교과목 수강 → 전공과목 미인정(잔여학점 인정)

(5) 대학원논문연구

- ①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과정	학과	교과목번호	취득한도	수료학점 포함여부
석사	의학과 및 협동과정	801.803	6학점	포함
박사			12학점	
통합			18학점	

- ②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단,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18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인정에 따라 학기당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소속전공 내 다른 교수 강좌번호로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타 학과 출신 석·박사 과정생의 선수과목 수강지침

(1) 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사과정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서 선수과목을 별도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상기과정을 이미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2) 선수과목 안내

- ① 선수과목: **인간생명과학개론**(교양과목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수강)
- ② 선수과목 대체 교과목: **의학입문자를 위한 우리 몸의 구조이해(영상의학 개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과학과 개설),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의과학과 개설)
- ③ 지도교수 수강지도에 따라 학사과정 2개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3) 신청방법

- ① **교과목별로 개설학기가 다르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의과대학 홈페이지의 선수과목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 ② 선수과목 대체 교과목의 경우 수료학점 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별도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료학점 인정 없이 선수과목으로만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간생명과학개론**의 경우 교양과목이므로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도 수료학점 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협동과정 전공자의 선수과목 수강 의무

- (1) 협동과정 전공자 중 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사과정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생이 **의학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위 선수과목 수강의 의무가 있다.**
- (2) 협동과정 전공자 중 의학학위가 아닌 타 학위 취득 희망자는 선수과목 및 이학학위 취득을 위한 자연과학대학 교과목 수강의 의무가 없다.

※ 의학과 및 협동과정 학위종류 및 종별학위

학과	학위종류	종별학위	학위종류	종별학위
의학과	석사	의학	박사	의학
협동과정 종양생물학		이학 수의학 약학 의학		이학 수의학 약학 의학 치의과학
협동과정 임상약리학		약학 의학		약학 의학
협동과정 줄기세포생물학		이학 의학		이학 의학
협동과정 의료정보학		간호학 의학 치의과학		간호학 의학 치의과학

※ 의학과에서 '이학'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이학학위취득요건 충족과 '학위 명칭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학행 정실로 제출

5)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 안내(2013. 3. 1. 개정)

(1)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교과목 또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12학점 이상(통합과정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논문심사 관련 요건은 p102 참조).

(2)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의학과 교과목 목록(2016. 3. 1. 개정)

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교과목명	비 고
1	801.2210	3	분자 및 세포미생물병인론	
2	801.2212	3	분자세포면역학개론	
3	801.2218	3	약물의 신호전달과 유전자발현	
4	801.2305	3	질환모델동물	
5	801.2803	3	세포면역학기법	
6	801.503	3	실험기법1	
7	801.505	3	자료처리론	

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교과목명	비 고
8	801.606	3	미생물유전학	
9	801.617	3	종양바이러스학	
10	801.689	3	분자면역학	
11	801.690	3	면역계기능	
12	801.692	3	바이러스학총론	
13	801.744A	3	생물리학	
14	801.746	3	생체신호처리론	
15	802.2001	3	기초면역학개론	
16	802.2005	3	분자세포의학총론	
17	802.2007	3	분자세포의학각론	
18	802.2242	3	종양유전체학	
19	803.508	3	종양신호전달	
20	803.511	3	종양학개론	
21	803.601	3	분자세포생물학개론1	
22	803.602	3	분자세포생물학개론2	
23	803.803	3	종양단백질체학	
24	M2860.000100	3	줄기세포의 분자-세포생물학	
25	M2860.000400	3	유도만능줄기세포생물학	
26	M2860.000600	3	시스템생물학 및 생물정보학	

6)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1) 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협동과정 전공자는 공동주관하는 대학의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 지원자격: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정규학기 1개 이상 이수,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3) 수학신청: 학교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 학교별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교무행정실로 제출

(4) 교과목의 이수: 이수하는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가능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 (**단, 과정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한다.

(7) 학점의 인정 기준

- ① 수료학점 중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1)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2/4선까지 포털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 ① 포털 mySNU(<http://my.snu.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 → 과목선택 → 취소사유 입력 → 저장 → 신청
- ② **담당교원 온라인 승인 후 취소가 완료됨**(담당교원의 의사에 따라 취소 승인 전 SMS 또는 E-mail로 사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신청기간 중 수강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담당교원 승인 이후 수강취소 반복 불가**

(3)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수강 취소는 불가하다.

8) 중복 이수 교과목의 수료학점 불인정

- (1) 석·박사과정 중 동일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는 수료 사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중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 (2)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이미 수강한 교과목과 중복이수로 인정되니 수강 신청 시 착오 없도록 주의 요망
 - ※ 예: 약동학(801.686)과 임상약동학(801.825)이 교과목 번호나 명칭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으로 전공교실에서 지정한 과목일 경우, 약동학을 기 이수하였으면 다음 학년도에 임상약동학을 이수해도 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 ※ 동일, 대체교과목 확인 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교과과정 > 동일/대체 교과목 검색 또는 수강신청 화면 로그인 > 동일과목조회

2

공통필수 교과목(연구윤리) 안내

M1923.011800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Ethics for Biomedical Researchers) 3-3-0

연구 윤리는 생명의료윤리의 분야로서 연구 수행의 규범적 규칙을 다룬다. 이 강좌에서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수행 과정, 연구 수행 후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윤리를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룬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학연구 관련한 국제 지침과 국내지침 및 법규정, 기관의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윤리 거버넌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윤리, 동물연구윤리, 생물안전, 출판윤리, 실험실 윤리,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이해충돌, 생명윤리위원회(IRB) 및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등 의생명과학 연구자가 연구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배운다.

3 공통과목(Common Subjects) 안내

1) 공통과목 목록

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교과목명	비 고
1	801.501	3	의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Medicine)	
2	801.502	3	의학통계론 (Medical Statistics)	
3	801.503	3	실험기법 1 (Experimental Techniques 1)	
4	801.505	3	자료처리론 (Computer Assisted Medical Data Processing)	
5	801.862	3	논문작성법 (Writing Scientific Papers)	
6	801.2302	3	의학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Education)	
7	801.2303	3	의학교육방법론개관 (Survey of Methodology in Medical Education)	
8	801.2304	3	실험동물학개론 (Laboratory Animal Science)	
9	801.2305	3	질환모델동물 (Animal Models)	
10	801.2306	3	신약개발을 위한 독성실험방법론 (Toxicological Research for New Drug Development)	
11	801.2601	3	근거중심보건의료 (Evidence Based Healthcare)	
12	801.5026	3	바이오메디칼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 (Prosecution and Enforcement of Biomedical Patents)	
13	801.5027	3	의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 (Bio-Medical Technology Law and Policy)	
14	M1923.006600	3	재난의학 (Disaster Medicine)	
15	M1923.011400	3	의학논문 작성 고급과정 (Advanced Course of Writing Medical Articles)	

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교과목명	비 고
16	M2480.001000	3	모델동물의 이해와 응용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odel Animals)	
17	M1923.011500	3	휴먼시스템의학입문 (Primer to Human System Medicine)	
18	M1923.011600	3	휴먼시스템의학강독 (Lecture and Discussion in Human Systems Medicine)	
19	M1923.011700	3	의과학자를 위한 혁신적인 리더십 (Innovative Leadership for Biomedical Researchers)	
20	M2480.001900	3	다학제적 중개의학 (Interprofessional Translational Medicine)	
21	M2480.002000	3	원헬스의 이론, 실제 및 응용 (One Health: Theories, Practice and Application)	

2) 공통과목 개요

(1) 801.501 의학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in Medicine) 3-3-0

의학분야의 대학원과정 중 논문계획서 작성 및 논문연구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연구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목표 설정, 또는 가설설정방법 연구계획, 표본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의 기본방법 등을 소개한다.

(2) 801.502 의학통계론(Medical Statistics) 3-3-0

본 과목은 의학연구에 쓰여지는 각종 통계기법을 기존의 연구에 적용한 실례를 들어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연구수행 시 자료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편의 통계법, 측정기법, 발생률 및 유병률, 생태적분포법 등 각종 제표방법 및 통계기법, 적용방법, 용량반응 분석, 역학적모델, 표본수 판정 및 임상시험법, 생명분석법 등이 소개된다.

(3) 801.503 실험기법 1(Experimental Techniques 1) 3-3-0

능률적인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는 데는 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기법의 이해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에 있어서 학부과정에서 경험한 일부기법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실험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이들의 공통적인 취약점이며, 이로 인하여 대학과정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따라서 본 강좌는 현재 의학 및 생물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실험기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시킴으로써 스스로 실험을 계획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801.505 자료처리론(Computer Assisted Medical Data Processing) 3-3-0

본 과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학연구 과정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임. 컴퓨터 구성과 이용법, 통계처리용 프로그램 사용법, 컴퓨터모델 작성법 등을 강의하여 대학원 연구과정에서의 실험데이터를 학생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음. 간단한 실험데이터는 퍼스널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생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리모델 분석의 경우에는 대형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 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실습할 것임.

(5) 801.862 논문작성법(Writing Scientific Papers) 3-2-2

대학원 교육은 각 전공에 대한 학문적인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하나의 주제를 잡아 실험을 수행한 다음 이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훈련이다. 그동안 다른 교과목은 학문적인 교육과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훈련을 주로 하고 있는 이는 주로 각 전공별로 중점교육을 하고 있다. 최종 단계인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과목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논문의 개념 정립, 논문의 종류, 논문의 형태, 체제,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작성의 기본원칙, 학술지 편집, 학술지 투고, 상호심의, SCI와 PubMed 소개 등 학술활동을 위하여 기본 지식과 정보를 교육하고자 한다. 특히 영어논문의 작성을 집중하여 교육하고자 한다.

(6) 801.2302 의학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Medical Education) 3-3-0

본 과목은 장차 의학교육을 담당하게 될 대학원 의학과 학생들에게 의학교육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주요 이슈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교육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학교육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학교육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지 등을 살펴보고, 과학교육과 전문직 직업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학교육을 조명한다. 또한 주요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하여 의학교육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며, 여러 이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7) 801.2303 의학교육방법론개관(Survey of Methodology in Medical Education)

3-3-0

본 과목은 장차 의학교육을 담당하게 될 대학원 의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의학교육의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교육은 전통적인 실천학습 외에도 세부 학문간 통합교육, 문제바탕학습, 진료수행평가, 시뮬레이션, 임상현장 교육(외래교육, 병동교육) 등 특유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이 각각의 방법론은 의학교육의 특수한 목표와 관련되어 있고 교육학적 분석 대상이며 동시에 교육학 이론의 지원 대상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학 분야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종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문헌 고찰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각 교육방법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각 방법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8) 801.2304 실험동물학개론(Laboratory Animal Science) 3-3-0

의학연구에서 동물실험의 중요성을 말할 것도 없이, 동물실험을 시작하는 단계의 초보의학자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동물실험을 할 수 있다. “실험동물학개론”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통계학적 평가, 실험동물의학의 역사와 동물실험의 정책, 법규, 주요 실험동물의 Biology와 질병, 실험동물의 Microbiological Control, 마취, 진정, 진통, 안락사, 실험기술, Biohazard Control, Xenotransplantation과 Xenozoonosis, 실험동물의 Genetic Monitoring과 형질전환동물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

(9) 801.2305 질환모델동물(Animal Models) 3-3-0

새로이 개발되는 신의약, 의료기기,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재료, 바이오장기 등에 대한 효능 평가를 위하여 각종 질환모델동물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질환모델동물”은 질환모델동물의 원리와 문제점, 독성연구, 생식독성연구, 알레르기, 심혈관계, 소화기계, 태자 생리학, 신장학, 당뇨, 신경학, 통증, 미생물감염, 종양 등 각종 연구에서 모델동물의 이용과 응용에 관한 강의로 구성된다.

(10) 801.2306 신약개발을 위한 독성실험방법론(Toxicological Research for New Drug Development) 3-3-0

새로이 개발되는 신의약, 의료기기,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재료, 바이오장기 등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나 이에 관한 강좌는 부족한 편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독성실험방법론”에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시험, 피부자극 및 감각

성, 안자극 독성, 흡입 독성, 신경 독성, 면역 독성, 신장 독성, 생식 / 발생 독성, 내분비 독성, 유전독성 / 발암성, 동물 조직병리 / 임상병리, 독물 동력학, 위해도 평가 등 각종 독성연구에 관한 강의로 구성된다.

(11) 801.2601 근거중심보건의료(Evidence Based Healthcare) 3-3-0

본 교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근거중심보건의료의 정의 및 배경, 보건의료에서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이르는 pipeline, 근거확보를 위한 연구 설계, 임상연구의 비판적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체계적 문헌고찰, 경제성 평가, 의료기술평가, 진료지침, 성과연구, 외국의 근거중심의사결정체계,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12) 801.5026 바이오메디칼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Prosecution and Enforcement of Biomedical Patents) 3-3-0

의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학적 이론들, 발명자권과 소유권, 특허요건들과 특허권 법적 소멸, 선행기술검색 및 발명실행의 자유검색, 특허문서작성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는 특허 침해와 방어이론, 특허권 범위 결정과 관련된 원칙들(청구항 해석, 균등론, 출원력상 금반언원칙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들을 다루게 된다.

(13) 801.5027 의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Bio-Medical Technology Law and Policy) 3-3-0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기술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관련당국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 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14) M1923.006600 재난의학(Disaster Medicine) 3-3-0

재난의학은 재난역학 및 예방, 재난의료상황관리, 재난정신의학, 재난응급의학, 화학/생물

학/방사능핵 특수재난의학, 재난의료공학으로 구성됨. 각 세부 재난의학분야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초 및 임상 분야의 통합적 융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함.

- ① 재난역학 및 예방: 재난환자의 발생 원인, 역학적 특성, 위험인구집단 규명 등을 기반으로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문
- ② 재난의료상황관리: 재난발생에 대한 의학적 수요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자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공급하며, 재난의료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적정재난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
- ③ 재난응급의학: 재난의료 현장 및 병원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 응급처치를 통하여 대규모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
- ④ 재난정신의학: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위험을 분석하고, 재난정신의학적 개입을 통한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학문
- ⑤ 화학/생물학/방사능핵 특수재난의학: 특수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재난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개인보호, 오염물질에 대한 제염제독에 관한 학문
- ⑥ 재난의료공학: 재난의료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공학 지식과 기술 분야로서, 개인보호 및 제염제독과 관련된 의공학

(15) M1923.011400 의학논문 작성 고급과정(Advanced Course of Writing Medical Articles) 3-3-0

이 과정은 의학논문 작성 기본을 이수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로 원저 논문(영어) 작성을 연습하는 과정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수강생은 논문작성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각자 본인의 연구 논문(영어)을 직접 작성해 보고, 다른 수강생의 논문을 읽은 다음 논문작성 기본개념에 근거하여 개념대로 잘 씌여진 부분과 잘못 씌여진 부분, 수정할 부분 등에 대해 제언하고 토론한다. 강의 담당교수는 토론을 이끌고 작성한 논문에 대하여 첨삭 지도를 한다.

(16) M2480.001000 모델동물의 이해와 응용(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odel Animals) 3-3-0

기초 유전학 및 바이오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Drosophila*, *C. elegans*, zebra fish, *xenopus* 등을 포함하여, 바이오분야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마우스와 같은 소형 실험동물부터 영장류까지, 기초 및 응용 전분야의 실험동물종을 망라하는 모델동물에 관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또한 생명연구윤리, 모델동물의 리소스 시스템, 동물실험대체시험법, 각종 질환연구에 활용

되고 있는 모델동물의 현황 - 대사성질환모델, 노화 및 퇴행성 질환, 뇌질환, 행동연구, 감염성 질환, 종양성 질환, 염증성 질환, 유전자조작모델동물 등의 세분화된 응용 주제로 편성된다.

(17) M1923.011500 휴먼시스템의학입문(Primer to Human System Medicine) 3-3-0

변화된 사회 환경과 새로운 의학적 요구로 인해 단순한 의학적 지식만이 아닌 의과학자임과 동시에 인간-사회를 통찰하고 이를 통합하여 아우르는 의료 분야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학생들에게 의료 전문가로서의 융복합적 학문이라 할 수 있는 휴먼시스템의학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휴먼시스템의학에 대한 개괄적 안내와 휴먼시스템의학을 구성하는 세부 학문적 내용을 소개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인문학, 사회과학, 의과학적 지식과 소양을 겸비하여 휴먼시스템즈 의학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게 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학문적,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인간과 사회 및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이크로, 메크로 시스템을 엮는 시스템즈 의학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휴먼시스템의학의 본질과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18) M1923.011600 휴먼시스템의학강독(Lecture and Discussion in Human Systems Medicine) 3-3-0

본 과목은 휴먼시스템의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휴먼시스템의학 제분야를 소개하고 각 분야별 학문적 발전 역사, 의학 내 위상과 의학 발전과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즉, 공공의료, 재난의료시스템, 시스템즈 정신의학, 의학교육학, 근거기반의료기술평가, 국제보건 등의 세부 분야에서 일구어 낸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학문적 연구를 들여다봄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이론과 실제적 이해를 고취시킨다. 이를 위해 강좌의 형식은 주요 분야의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은 휴먼시스템의학의 세부 분야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될 것이다.

(19) M1923.011700 의과학자를 위한 혁신적인 리더십(Innovative Leadership for Biomedical Researchers) 3-3-0

본 강좌는 의과학 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사업화를 이끌고자 하는 의과학자들이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추구하여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마인드셋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성공적인 상호 보완적 창업팀 형성, 의과학 기술개발의 특성, 창업 초기 법적 비즈니스적 위험, 비즈니스 플랜 작성 및 발표능력 등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훈련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수강생들이 (1) 의과학의 학문, 비즈니스, 그리고 학제간 맥락에서 연구의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 및 관리 전략을 만들어 수행할 수 있고, (2) 혁신적인 연구 및 기술의 환경에서 리더십 기술과 개인적 강점을 통해 조직적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행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3) 인간 상호 관계의 원리와 그런 원리가 과학자와 비과학자 간의 의사 소통에 주는 영향을 봄으로써 진정한 리더십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4) 실무지식을 통해 지식과 기술의 수출, 수입, 그리고 승인에서의 기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5) 금전적 및 비금전적 척도에서 획기적인 혁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식별, 평가,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 M2480.001900 다학제적 중개의학(Interprofessional Translational Medicine)

3-3-0

본 교과목은 기초 연구 결과의 임상 적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임상적 상황에서 확인된 질병의 원리 탐색을 통하여 새로운 진단법 개발과 치료 모델을 확립하는 중개의학 관련 주제를 다룬다. 중개 의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관련 중개의학 관련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1) M2480.002000 원헬스의 이론, 실제 및 응용(One Health: Theories, Practice and Application) 3-3-0

전 세계는 최근 신종·변종 인수 공통감염병의 증가, 환경변화에 의한 환경 유래 질병 및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만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원헬스적 접근이라 한다. 본 강좌는 One Health 개념을 바탕으로 감염병(특히 인수 공통감염병), 환경성 질환과 만성 질병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법을 강의와 토론으로 다루고자 한다.

4

의학과, 협동과정 수료 요건 자가 점검 리스트

- 의과대학의 경우, 마이스누에서 확인하는 수료 시뮬레이션과 실제 수료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구 분 (석사 / 박사 / 통합과정)	석사	박사	석박통합
연구윤리 이수 여부	☐ Yes, ☐ No	☐ Yes, ☐ No ☐ 석사과정 이수	☐ Yes, ☐ No
공통과목 이수 여부 (6 / 6 / 12학점)	☐ Yes, ☐ No	☐ Yes, ☐ No	☐ Yes, ☐ No
주전공과목 이수 여부 (6 / 9 / 15학점) ¹⁾	☐ Yes, ☐ No	☐ Yes, ☐ No	☐ Yes, ☐ No
선수과목 6학점 이수 여부 (의학 학사가 아닌 학생이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됨) ²⁾	☐ Yes, ☐ No, ☐ 해당없음	☐ Yes, ☐ No, ☐ 석사과정 이수 ☐ 해당없음	☐ Yes, ☐ No, ☐ 해당없음
수료 기준학점 취득 여부 (24학점 / 36학점 / 60학점)	☐ Yes, ☐ No	☐ Yes, ☐ No	☐ Yes, ☐ No
평점평균 3.0 이상	☐ Yes, ☐ No	☐ Yes, ☐ No	☐ Yes, ☐ No
등록 학기 수 (4학기 이상 / 4학기 이상 / 6학기 이상)	☐ Yes, ☐ No	☐ Yes, ☐ No	☐ Yes, ☐ No

- 위 질문에 하나라도 No가 있을 경우, 수료 불가함
- 수료 요건 만족 시, 자동으로 수료로 넘어감(별도 수료 신청 불필요)

1) 본인의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만이 전공과목으로 인정됨

예) 의학과 내과학 전공 학생

- 의학과 내과학전공에서 개설한 과목만 전공과목으로 인정됨
- 의학과 타 전공 (내과학 외 전공) / 타 학과(의과학과, 임상위생학과 등)에서 개설한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잔여 학점으로만 인정됨)

2) 의학과는 기본 수여 학위가 "의학"이므로, 의학과 학생 중 비의학사(학부가 의대출신이 아님) 인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비의학사여도 의무석사(의전 졸업)라면 선수과목 수강 불필요)

비의학사 협동과정 학생이 선수과목 미이수하고 수료한 이후에는 의학 학위를 절대 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수료 전 반드시 확인 및 이수 요망

[추가 별도 확인 사항]

- ① 인간생명과학개론, 한국어와 한국문화1, 한국어와 한국문화2 : 수료학점에서 제외됨
- ②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추가 요건/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해당 없음)
 -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3.7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졸업 학점에서 제외 됨
 - 예) 2020년 1학기 평점평균이 3.69 인 경우
 - ☞ 2020년 2학기에 12학점을 신청하여 취득하더라도, 수료사정 시에는 9학점만 인정됨
 - cf. 2020년 2학기 평점평균이 3.69라도, 2021년 1학기에는 12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12학점이 전부 인정 가능
- ③ 의학과 학생 중 이학학위 수여를 원할 경우
 - 자연과학대학 교과목 또는 인정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함
 - ☞ **해당 요건 미충족하고 수료한 후에는 절대 이학학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수료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④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의 경우, 석사는 6학점, 박사는 12학점, 석박통합은 18학점까지만 인정됨(추가 학점은 수료 시 제외됨)
 - 석·박사의 경우, 한 학기에 논문연구를 2과목 이상 동시 수강 불가(석박통합은 지도교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 가능)

의 과학 과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5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수강신청은 의과학과가 개설한 교과목을 기본으로 한다. 의과학과 개설교과목은 ‘세미나’, ‘핵심’, ‘심화’, ‘논문연구’ 교과목군으로 구분된다. 의과학과 학생은 아래의 세부주제 분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교수와 긴밀한 상의 하에 본인의 연구영역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 분자세포의과학 (Cellular Molecular Medicine)
- ◆ 생리-신경의과학 (Physiology & Neuroscience)
- ◆ 면역의과학 (Immunology)
- ◆ 옴믹스-정보의과학 (Omics and Biomedical Informatics)
- ◆ 융합대사의과학 (Convergence Degradation Medicine)
- ◆ 감염질환의과학 (Infectious Disease)

1) 신청학점: 12학점까지(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참고) 2020년 2학기까지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자에 한해 해당 학기에 1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학 첫 학기에는 9학점만 신청 가능 (단, 본교 의과대학 석사 졸업 후 박사 입학생의 경우 석사 누적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경우 첫 학기에도 12학점 신청 가능)
- 해당 요건 미충족한 경우,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수료 사정 시 해당 학점은 제외됨

2) 수강과목

구 분	총 이수학점	연구윤리	필수학점	대학원논문연구	잔여학점
석 사	24	3	12	0~6	3~9
박 사	36	3	15	0~12	6~18
통 합	60	3	27	0~18	12~30

(1) 의과학과 개설교과목은 ‘필수’ ‘세미나’, ‘핵심’, ‘심화’, ‘논문연구’ 군으로 구분된다.

- (2) 구체적 교과목 명칭 및 개설 시기는 ‘교과목운영 및 수강 세부지침’을 따른다.
- (3)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는 모든 대학원생의 공통필수 과목이며 전체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 (4) 세미나 교과는 석사과정에서 1개, 박사과정은 1개, 석·박통합과정은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최대 학점 인정 과목수는 석사과정 2개, 박사과정 4개, 석·박통합과정은 6개로 한다. 단, 세미나는 의과학과 개설 세미나 강좌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미나 교과는 부제별로 강좌번호가 달리 부여되며, 이는 각각 별도의 학점 취득으로 인정된다(동일 강좌번호를 중복 수강 시 수료 이수학점 미달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5) 핵심교과목군에서 석사과정은 2개 이상, 박사과정은 4개 이상, 통합과정은 6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부 졸업이 의학과인 경우에는 초급분자세포의과학(806.505) 또는 고급분자세포의과학(806.506) 중 1 과목, 학부 졸업이 의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806.503) 또는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806.622A)에서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6) 논문연구 교과목 신청 시 담당 교수(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논문연구 교과목은 한 학기에 1강좌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 (7) 학위연구에 필요하나 의과학과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학과와 전공단위 교과목 수강이 인정된다.
- (8) 2016학년부터 2020학번 및 2015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안내된 이수 기준을 따른다(예외 신청 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별도 문의).

※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다.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생은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3학점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2010학년부터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된 연구 윤리(990.501A)와 동일한 교과목
- 석사와 석·박통합과정생은 첫 학기에 의과학강독(806.501A)을 이수하여야 한다.
- 우수의과학자세미나(M1932.005000)와 같은 세미나 교과목은 이미 수강한 부제명과 중복되

지 않아야 한다. (강좌번호는 동일하더라도 강의 부제명은 학기마다 다르며, 부제번호가 다른 각각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함).

- 대학원논문연구는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교과목군의 구체적 강좌명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수강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과학과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영상안내 내용을 참고한다.

3) 교과목 안내

구분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필 수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M1923.011800
	의과학강독	806.501A
세미나	우수의과학자 세미나	M1932.005000
	세포생리학세미나	M1932.004500
	분자생리학세미나	M1932.004600
핵심	인체의 구조와 기능	806.503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	806.622A
	논문작성법	801.862
	신경과학개론 I	M1932.001400
	신경과학개론 II	M1932.001900
	실험기법 1	801.503
	초급분자세포의과학	806.505
	고급분자세포의과학	806.506
	종양의학 총론	806.623A
	의생명과학연구의 융합적 이해	M1932.005800
	면역학의 이해	M1932.000400
	시스템의학입문	M1932.003400
	분자생물학통계	806.634
	인체생리학분자생물학개론	M1932.000600
	세포분해생물학 1	M1932.005500
	약물요법의 이해	M1932.005400

구분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심화	분자세포	항암면역시스템의 이해 및 치료제 개발
		M1932.004700
		약작용의 원리
		M1932.002600
		인체질환과 후성유전체학
	생리-신경	806.524A
		폐쇄성기도질환의 이해
		M1932.001700
		최신 종양연구의 이해
		M1932.005600
		전기생리학특론
		M1932.001800
		이온통로학개론
		M1932.002800
	면역	세포영상개론
		M1932.001600
		심혈관-대사생리학
		M1932.001200
		신경계질환의 병인기작 및 약물개발 전략
		806.508A
		에너지대사와 신경계 특론
		M1932.004900
		시냅스특론
		M1932.001300
		에너지대사와 신경계에 의한 조절
		M1932.004300
	면역	심화면역학개론
		M1932.000100
		B세포의 면역기능과 항체형성조절의 이해
		M1932.006600
		종양면역
		806.633
		점막면역학
		M1932.003800
	오믹스-정보	선천면역학
		M1932.000700
		T세포조절특론
		M1932.002300
		노화와 면역시스템
		806.647
		피부면역학
		M2951.000500
		유전체의학
		806.625
		고급유전체의학
		M1932.005100
		설명가능 의료 인공지능
		M1932.004400
		심화 설명가능 의료 인공지능
		M1932.006300
		맞춤약물요법연구
		806.630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방법론
		M1932.003100
		생체지표증개연구
		M1932.001000
		자기공명영상
		M1932.003300
		공간전사체학 개론
		M1932.006400

구분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심화	융합대사	세포분해생물학 2	M1932.006000
	감염질환	감염면역	806.513A
		기생충감염증	M1932.004800
		세균 생리학 특론	M1932.005300
		병원 미생물 및 면역학 실험	M2939.000300
		신종 감염병의 이해 1	M1932.006200
		신종 감염병의 이해 2	M1932.006100

4)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 안내(2013. 3. 1. 개정)

(1)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교과목 또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12학점 이상(통합과정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논문심사 관련 요건은 p102 참조).

(2)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의과학과 교과목 목록(2016. 3. 1. 개정)

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교과목명	비 고
1	806.501A	3	의과학강독	
2	M1932.005000	3	우수의과학자 세미나	[동일]806.502A 우수의과학자특강
3	806.503	3	인체의 구조와 기능	
4	806.505	3	초급분자세포의과학	
5	806.506	3	고급분자세포의과학	
6	806.526	3	생체분자영상개론	
7	806.622A	3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	[동일]806.524 인체질병의 병태생리학개론 [동일]806.622 질환발생의 의과학적 이해
8	806.623A	3	종양의학 총론	[동일]806.623 종양생물학의 이해
9	806.625	3	유전체의학	
10	806.634	3	분자생물학통계	
11	M1932.001900	3	신경과학개론 II	[동일]806.636 신경과학입문 II
12	M1932.000400	3	면역학의 이해	[동일]806.510A 면역학개론
13	M1932.001400	3	신경과학개론 I	[동일] 806.507 신경생리학원론

5)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1) 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 지원자격: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 (3) 수학신청: 학교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 학교 별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교무행정실로 제출
- (4) 교과목의 이수: 이수하는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가능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 (단, 과정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6)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7) 학점의 인정 기준

- ① 수료학점 중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 (1)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2/4선까지 포털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 ① 포털 mySNU(<http://my.snu.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 → 과목선택 → 취소사유 입력 → 저장 → 신청
 - ② **담당교원 온라인 승인 후 취소가 완료됨**(담당교원의 의사에 따라 취소 승인 전 SMS 또는
E-mail로 사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신청기간 중 수강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담당교원 승인 이후 수강취소 반복 불가**
- (3)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수강 취소는 불가하다.

7) 중복 이수 교과목의 수료학점 불인정

- (1) 석·박사과정 중 동일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는 수료 사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
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중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 (2)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이미 수강한 교과목과 중복이수로 인정되니 수강 신청 시
착오 없도록 주의 요망
 - ※ 예: 약동학(801.686)과 임상약동학(801.825)이 교과목 번호나 명칭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으
로 전공교실에서 지정한 과목일 경우, 약동학을 기 이수하였으면 다음 학년도에 임상약동학을 이수해도
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 ※ 동일, 대체교과목 확인 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교과과정 > 동일/대체 교
과목 검색 또는 수강신청 화면 로그인 > 동일과목조회

임 상 의 과 학 과

(Department of Clinical Medical Sciences)



6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상 의과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수강신청은 임상 의과학과가 개설한 교과목을 기본으로 한다. 임상 의과학과에는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임상 의과학과는 세부 전공이 별도로 없이 단일전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긴밀한 상의 하에 본인의 연구영역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설된다. 임상 의과학과 교과목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의대 내 타 학과 및 협동과정, 융합전공 혁신의과학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도 신청할 수 있다.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이다. 이 중 대학원논문연구 학점(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과 필수학점(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학점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을 제외한 범위에서 선택과목을 신청한다. 석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이전에 수강했던 동일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 학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 신청학점

- (1) 석사: 9학점까지(단,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자는 해당 학기에 한해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예) 2023-1학기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경우 → 2023-2학기에 12학점 신청 가능

- (2) 박사: 9학점까지(단,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A-(3.7) 이상인 자는 해당 학기에 한해 1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의과대학 석사 졸업 후 박사 입학생의 경우 석사 누적평점평균이 A-(3.7)인 경우 첫 학기에도 12학점 신청 가능)

(예) 2023-1학기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경우 → 2023-2학기에 12학점 신청 가능

※ 수강신청 시 별도의 전산제어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1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항이 임상 의과학과 내규로 정해져 있으므로 꼭 지켜서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 시 초과한 학점을 제외하고 졸업사정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과목

(1) 과정별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총 이수학점	공통필수		전공필수	잔여학점	대학원 논문연구
		연구윤리	공통과목			
석 사	24	3	3	6	6	6
박 사	36	3	3	9	9	12

(2) 연구 윤리

- ①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를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된 연구 윤리(2010학번부터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와 동일한 교과목

- ② 단,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3학점을 다른 공통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와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는 동일교과목이므로 중복이수 시 수료학점에서 제외된다.

(3) 공통과목

- ① 약 21개의 공통과목이 매 학기 순환하여 개설되며, 반드시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의학과 공통과목 목록 p32 참조)
- ② 공통과목 중 일부 과목은 연건캠퍼스-분당병원-보라매병원에서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니, 수강신청 시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 화상강의 안내를 확인하여 수강한다.

(4) 전공필수

- ① 임상 의과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석사 6학점 이상, 박사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공필수과목 중 일부 과목은 연건캠퍼스-분당병원-보라매병원에서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니, 수강신청 시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 화상강의 안내를 확인하여 수강한다.

(5) 대학원논문연구

- ①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대학원논문연구 학점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과 정	학 과	교과목 번호	수료학점 포함여부	취득한도
석·박사	임상의과학과	808.803	포 함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 ②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3) 타 학과 출신 석·박사 과정생의 선수과목 수강지침

- (1) 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사과정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서 선수과목을 별도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상기과정을 이미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2) 선수과목 안내

- ① 선수과목: **인간생명과학개론(교양과목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수강)**
- ② 선수과목 대체 교과목: **의학입문자를 위한 우리 몸의 구조이해(영상의학 개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과학과 개설),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의과학과 개설)**
- ③ 지도교수 수강지도에 따라 학사과정 2개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3) 신청방법

- ① 교과목별로 개설학기가 다르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의과대학 홈페이지의 선수과목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 ② 선수과목 대체 교과목의 경우 수료학점 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별도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료학점 인정 없이 선수과목으로만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간생명과학개론**의 경우 교양과목이므로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도 수료학점 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1) 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협동과정 전공자는 공동주관하는 대학의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 지원자격: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 (3) 수학신청: 학교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 학교별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교무행정실로 제출

- (4) 교과목의 이수: 이수하는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가능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 (단, 과정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6)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7) 학점의 인정 기준

- ① 수료학점 중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 (1)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2/4선까지 포털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 ① 포털 mySNU(<http://my.snu.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 → 과목선택 → 취소사유 입력 → 저장 → 신청
 - ② **담당교원 온라인 승인 후 취소가 완료됨**(담당교원의 의사에 따라 취소 승인 전 SMS 또는 E-mail로 사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신청기간 중 수강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담당교원 승인 이후 수강취소 번복 불가**
- (3)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수강 취소는 불가하다.

6) 중복 이수 교과목의 수료학점 불인정

- (1) 석·박사과정 중 동일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는 수료 사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중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 (2)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이미 수강한 교과목과 중복이수로 인정되니 수강 신청 시 착오 없도록 주의 요망
 - ※ 예: 약동학(801.686)과 임상약동학(801.825)이 교과목 번호나 명칭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으로 전공교실에서 지정한 과목일 경우, 약동학을 기 이수하였으면 다음 학년도에 임상약동학을 이수해도 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 ※ 동일, 대체교과목 확인 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교과과정 > 동일/대체 교과목 검색 또는 수강신청 화면 로그인 > 동일과목조회
 - ※ 기타 이외의 사항은 의학과 교과과정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휴먼시스템의학과

(Department of Human Systems Medicine)



7

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수강신청은 휴먼시스템의학과가 개설한 교과목을 기본으로 한다. 휴먼시스템의학과에는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휴먼시스템의학과는 세부 전공이 별도로 없이 단일전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긴밀한 상의 하에 본인의 연구영역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필수과목은 매년 개설되며, 선택과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설된다.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60학점이다. 이 중 대학원은 문연구 학점(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통합 18학점)과 필수학점을 제외한 범위에서 선택과목을 신청한다. 석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 학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 신청학점: 12학점까지

2) 수강과목

(1) 과정별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윤리	전공필수	전공선택	대학원 논문연구	총 이수학점
석사	3	6	6	6	24(3)
박사	3	6	9	12	36(6)
석·박 통합	3	12	15	18	60(12)

※ ()는 잔여학점으로, 휴먼시스템의학과 교과목 외에도 의학과, 의과학과 등에서 개설한 교과목도 이수 가능하다.

(2) 연구 윤리

- ①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를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 ② 단, 석사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3학점을 다른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와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는 동일교과목이므로 중복이수 시 수료학점에서 제외된다.

(3)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구분	개설학기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전공필수	1	M1923.011500	휴먼시스템의학입문
	2	M1923.011600	휴먼시스템의학강독
전공선택	1	M3291.000300	재난과 질병
	1	M3291.003500	의학교육학특강
	1	M3291.001000	진화의학
	1	M3291.001100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합성
	1	M3291.001400	디지털 건강 모니터링을 이용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1	M3291.001800	대학생 정신건강의 이해
	1	M3291.002100	글로벌의학과 인도주의
	1	M3291.002200	글로벌의학 개론
	1	M3291.002400	의료기술 평가방법론과 통계적 접근
	1	M3291.002700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1	M3291.003200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
	1	M3291.003300	국제의학 중재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전공선택	2	M3291.000400	재난의료시스템
	2	M3291.000700	의학교육방법론
	2	M3291.000800	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M3291.000900	개념적 정신병리학
	2	M3291.001200	재택의료
	2	M3291.001300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2	M3291.001500	의료인력 개론
	2	M3291.001600	의료환경에서의 집단대화촉진법 개론
	2	M3291.001700	효과적인 환자교육 및 상담방법론
	2	M3291.002000	글로벌의학의 이해와 접근전략
	2	M3291.002300	적정과 필수 글로벌의료 기술
	2	M3291.002600	혼합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업/정책 평가
	2	M3291.002800	생사와 행복에 대한 통합적 관점
	2	M3291.002900	국제의학개론
	2	M3291.003000	행복과 건강에 관한 비약물적 접근방식고찰

(4) 대학원논문연구

①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과정	교과목번호	취득한도	수료학점 포함여부
석사	M3291.000500	6학점	포함
박사		12학점	
통합		18학점	

②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단,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18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인정에 따라 학기당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소속전공 내 다른 교수 강좌번호로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석사과정에 취득한 초과학점은 박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타 대학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 잔여학점 범위 내에서 (석사 3학점, 박사 6학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 하에 학점 이수를 인정함
- 비의학사 학생은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중에 선수과목[휴먼시스템의학입문, 휴먼시스템의학강독]을 6학점을 이수해야 함

3) 학사운영

(1) 학위과정관리

① 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과정은 수료 후 6년 이내로 함

② 전공 이수과목 및 학점

- 석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함
-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석박사 통합 60학점) 이상으로 함

③ 교과운영 및 필수수강기간

-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 단 3인 이하의 경우에도 필요시 학과장 재량에 따라 개설 가능함
- 석사 및 박사 과정생은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 할 수 있음

④ 지도교수 및 공동 지도교수

- 입학과 동시에 학과장은 학생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함
- 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 전공 관련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타 계열 교원을 위촉할 수 있음
-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음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해당 국가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음

⑤ 학위논문제출자격

- 석사, 박사 및 석박통합 과정학생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석박통합과정에 입학한 후 박사과정에 진입할 의사가 없는 자는 통합과정 포기원을 제출하고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그 시험에 통과하면 논문을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음
-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자격인증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석사과정 입학시험 때만 부과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과목의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입학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⑥ 논문지도 및 심사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최소한 1명의 지도교수가 수강지도와 논문 지도를 함
- 학위논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함
- 석사과정의 경우는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는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논문제출 시한을 둠

⑦ 학위수여

- 대학원장은 논문제출자격, 논문심사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함

(2) 대학원생 구성

- 전일제+비전일제 대학원생 모두 입학 허용
- MD 전일제대학원생: 기초연수의·융합형의사과학자 프로그램에서 지원 가능 (장학금+생활비 보조)
- 전공의 과정 중인 비전일제 대학원생: 융합형의사과학자 프로그램에서 지원 가능 (장학금)

(3) 공동지도교수제 운영과 대학원생 배정

- 전임/기금교수-비기금연구교수 간 매칭을 통한 연구집단 형성 지도
- 임상교원은 공동지도교수 가능
- 신진교수 및 연구집단에 우선 대학원생 배정

4)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

(1) 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2) 지원자격: 누적성적 평점평균 3.3(B+) 이상이며, 정규학기를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3) 수학신청: 학교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 학교별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교무행정실로 제출

(4) 교과목의 이수: 이수하는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가능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 (**단, 과정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한다.

(7) 학점의 인정 기준

- ① 수료학점 중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 (1)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2/4선까지 포털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① 포털 mySNU(<http://my.snu.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 → 과목선택 → 취소사유 입력 → 저장 → 신청

② **담당교원 온라인 승인 후 취소가 완료됨**(담당교원의 의사에 따라 취소 승인 전 SMS 또는 E-mail로 사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신청기간 중 수강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담당교원 승인 이후 수강취소 번복 불가**

- (3)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수강 취소는 불가하다.

6) 중복 이수 교과목의 수료학점 불인정

- (1) 석·박사과정 중 동일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는 수료 사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중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 (2)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이미 수강한 교과목과 중복이수로 인정되니 수강 신청 시 착오 없도록 주의 요망

※ 예: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인문적 성찰'(M3291.002500)과 '생사와 행복에 대한 통합적 관점'(M3291.002800)은 과목명과 교과목번호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하여 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이므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인문적 성찰'을 기 이수하였으면 추후 '생사와 행복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이수해도 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 동일, 대체교과목 확인 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교과과정 > 동일/대체 교과목 검색 또는 수강신청 화면 로그인 > 동일과목조회

의료기기산업학과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Development)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수강과목 신청기준

수강신청은 의료기기산업학과가 개설한 교과목을 기본으로 한다. 의료기기산업학과에는 전공 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의료기기산업학과는 세부 전공이 별도로 없이 단일학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긴밀한 상의 하에 본인의 연구영역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의료기기산업학과 교과목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학과, 의과학과, 협동과정 등에서 개설한 교과목도 신청할 수 있다.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60학점이다. 이 중 대학원논문연구 학점(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통합 18학점)과 필수학점을 제외한 범위에서 선택과목을 신청한다. 개설 교과목은 매 학기 달라지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시 확인해야 하며, 석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이전에 수강했던 동일 교과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 수강 학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 신청학점: 12학점까지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2) 수강과목

(1) 과정별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총 이수학점	연구윤리	전공필수	전공선택	대학원 논문연구	잔여학점
석 사	24	3	6	6	6	3
박 사	36	3	6	9	12	6
통 합	60	3	12	15	18	12

(2) 연구 윤리

- ①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를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된 연구 윤리(2010학년부터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와 동일한 교과목

- ② 석사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3학점을 의학과 공통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필수

- ① 의료기기산업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석사 6학점, 박사 6학점, 통합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기를 위한 의학개론(M3380.000100)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의학과 공통과목 중 의학통계론(801.502)을 이수할 시, 의료기기산업학과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전공선택

- ① 의료기기산업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의학과 공통과목 중 바이오메디칼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801.5026), 의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801.5027)을 이수할 시, 의료기기산업학과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5) 대학원논문연구

- ①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과정	학과	교과목번호	취득한도	수료학점 포함여부
석사	의료기기산업학과	M3380.000600	6학점	포함
박사			12학점	
통합			18학점	

- ②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단,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18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인정에 따라 학기당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1) 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협동과정 전공자는 공동주관하는 대학의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 지원자격: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 (3) 수학신청: 학교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 학교 별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교무행정실로 제출

- (4) 교과목의 이수: 이수하는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가능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 (단, 과정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6)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한다.

(7) 학점의 인정 기준

- ① 수료학점 중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 (1)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2/4선까지 포털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 ① 포털 mySNU(<http://my.snu.ac.kr>) 접속 후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 → 과목선택 → 취소사유 입력 → 저장 → 신청
 - ② **담당교원 온라인 승인 후 취소가 완료됨**(담당교원의 의사에 따라 취소 승인 전 SMS 또는 E-mail로 사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신청기간 중 수강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담당교원 승인 이후 수강취소 번복 불가**
- (3)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수강 취소는 불가하다.

5) 중복 이수 교과목의 수료학점 불인정

- (1) 석·박사과정 중 동일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는 수료 사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중복과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 (2)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이미 수강한 교과목과 중복이수로 인정되니 수강 신청 시 착오 없도록 주의 요망
 - ※ 예: 약동학(801.686)과 임상약동학(801.825)이 교과목 번호나 명칭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으로 전공교실에서 지정한 과목일 경우, 약동학을 기 이수하였으면 다음 학년도에 임상약동학을 이수해도 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 ※ 동일, 대체교과목 확인 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교과과정 > 동일/대체 교과목 검색 또는 수강신청 화면 로그인 > 동일과목조회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Integrated Major in Innovative Medical Science)



9

서울대학교 대학원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수강과목 신청기준

대학원 융합전공은 대학원 학생의 다양한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학제 간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운영 형태는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공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석사·박사과정 수료요건 등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합전공 혁신의과학은 의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협)종양생물학, (협)임상약리학, (협)의료정보학, (협)바이오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 소속 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며, 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입을 허가하고 있다.

1) 신청학점: 15학점까지

2) 수강과목 이수요건

(1) 이수 전공학점 (원 소속학과(부)와 융합전공 두 가지를 이수하는 경우)

구분	융합전공 총 이수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선택 및 공통교과목	원 소속학과(부) 및 융합전공 두가지 이수 시 총 이수학점
석사	24	6	-	18	최소 36
박사	36	6	3	27	최소 54
통합	60	6	9	45	최소 78

① 수료요건: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원 소속학과(부)의 수료요건과는 별도)

② 원 소속학과(부)와 융합전공 두가지를 이수하는 경우 수료학점의 1/4 이상은 원 소속학과(부)의 개설 교과목이 아닌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6학점 이상, 박사과정 9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5학점 이상)

※ 단, 박사과정의 경우 이미 석사과정에서 융합전공 필수과목 6학점을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한다.

③ 융합전공 총 이수학점 중,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7학점, 통합과정 45학점)은 융합전공 참여학과(부)가 융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하는 공통교과목 또는 융합전공선택과목 중에서 이수해야 한다.

- ④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원소속 학과(부)의 전공과 융합전공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나열된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석사·박사통합과정은 42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2) 이수 전공학점 (원 소속학과(부)의 전공을 취소하고 융합전공만을 선택 이수하는 경우)

※ 2024학년도 1학기 선발자부터 융합전공 및 소속학과(부)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여야 함.

(융합전공만 이수 불가)

- ① 수료요건: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60학점
- ② 과정별 수료 학점(의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협)중앙생물학, 협)임상약리학, 협)의료정보학)
- 석사과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 중 6학점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3학점 이상
 - 의학과 공통과목 6학점
 - 대학원 논문연구과목 최대 6학점
 - 박사과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 중 6학점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9학점 이상
 - 의학과 공통과목 6학점
 - 대학원 논문연구과목 최대 12학점
- ※ 단, 석사과정에서 융합전공 필수과목 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15학점 이상 이수
- 통합과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 중 6학점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15학점 이상
 - 의학과 공통과목 12학점 이수
 - 대학원 논문연구과목 최대 18학점 이수

[의과대학 참여 학과 및 협동과정 기준]

구분	융합전공 이수학점	연구윤리	융합전공 전공필수	융합전공 전공선택	의학과 공통과목	대학원 논문연구	잔여학점
석사	24	3	6	3	6	6	0
박사	36	3	6(0)	9(15)	6	12	0
통합	60	3	6	15	12	18	6

③ 과정별 수료 학점(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 석사과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 중 6학점 이상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3학점 이상
 - 박사과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 중 6학점 이상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9학점 이상
- ※ 단, 석사과정에서 융합전공 필수과목 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15학점 이상 이수
- ※ 단, 석사과정에서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개론, 세미나를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에서 인정하는 공통교과목 이거나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8학점 이상 이수
- 통합과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 중 6학점 이상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15학점 이상
 - 공통사항 -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바이오엔지니어링개론 1, 2 이수
 -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바이오엔지니어링세미나 1, 2, 3 중 2개 이상 이수

[공과대학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기준]

구분	융합전공이수학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개론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세미나	융합전공 전공필수	융합전공 전공선택	논문연구	잔여학점
석사	24	1, 2 이수 (6학점)	1, 2, 3 중 2개 이상 이수 (2학점 이상)	6	3	6	1
박사	36			6(0)	9(15)	12	1
통합	60			6	15	18	13

(3) 선수과목: 해당사항 없음

(4) 수여학위종별: 원 소속학과(부)의 규정에 따름

(5) 기타 이수에 필요한 사항: 논문연구 학점 및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원 소속학과(부)의 규정에 따름

(6) 대체교과목: 융합전공 개설 교과목에 대응하여 참여학과를 포함하는 타 학과 개설 교과목 중 교과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복수의 교과목 이수 조합으로 융합전공 개설교과목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합전공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융합전공 선발 전 대체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융합전공 개설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융합전공 진입 후 수강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체교과목 인정은 융합전공 개설 전공선택 교과목에 한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교과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7) 교과과정

•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전공 교과목 및 공통 교과목

■ 전공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개설학과(전공)
전공필수	M3314.000100	혁신의과학 총론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200	혁신의과학 세미나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전공선택	M3314.000300	혁신의과학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400	정밀의학 입문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500	디지털 헬스케어 입문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600	인공지능의 의료 응용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700	국제미래혁신의료와 건강관리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800	맞춤 약물요법 개발과 정밀의학적 적용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0900	정량적 시스템 약리학 개론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000	인체유래물 중개 연구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100	항암제 후보물질의 임상개발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200	유전성암과 암발병 예측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300	암 중개연구 총론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400	미래 건강의학: 질병관리와 예방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500	환경-의료 융합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방법론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600	혁신의과학 산업협력 실습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700	혁신의과학 특강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800	의료기기 규제과학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1900	의과학자를 위한 의생명 기초코딩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2000	혁신의과학논문강독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2100	의공학 최신 동향 탐구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M3314.002200	디지털 병리 영상의 이해 및 분석법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 2군교과목

■ 공통 교과목

[혁신의과학 참여 학과 나열교과목]

이수구분	공통교과목
전공선택 (공통교과목)	의학과 공통과목 및 나열교과목
	휴먼시스템의학과 나열교과목
	의료기기산업학과 나열교과목
	협동과정 종양생물학 나열교과목
	협동과정 임상약리학 나열교과목
	협동과정 의료정보학 나열교과목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나열교과목

[참고: (협)바이오엔지니어링 나열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전공선택 (공통교과목)	461.501	응용미생물학특론
	461.502	컴퓨터의학응용
	461.503	의학물리
	461.504	바이오엔지니어링 개론1
	461.505	바이오엔지니어링 개론 2
	461.602	단백질공학특강
	461.603	항체공학
	461.604	생물정보학과 응용
	461.605	생물신소재와 조직공학
	461.606	의용계측
	461.607	생체현상에 대한 공학적 해석
	461.614	의용생체신호해석론
	461.615	의학영상응용
	461.616	인공장기특강
	461.617	의용생체시스템해석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전공선택 (공동교과목)	461.618	의료정보시스템설계
	461.619	의용생체공학특강
	461.620	바이오엔지니어링세미나 1
	461.621	바이오엔지니어링세미나 2
	461.622	바이오엔지니어링세미나 3
	461.628	신경공학
	461.629	생물전자기학
	461.630	마이크로머신과 바이오로봇공학
	461.631	생체모방학
	461.634	재활공학
	461.635	의료기기학
	461.701	바이오엔지니어링 특강
	M1590.000100	의용생체역학
	M1590.000200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의료정보추출 및 분석
	M1590.000300	공학자를 위한 임상개론 1
	M1590.000400	공학자를 위한 임상개론 2
	M1590.001000	합성생물학특론
	M1590.001100	재생공학특론
	M1590.001200	생물모사공학
	M1590.001300	생물공정공학특론
	M1590.001400	분자생물공학특론

(8) 타 학과(부) 전공 인정 교과목

이수구분	과목명	개설학과
공동교과목	시스템의학개론 (M1932.001100) 3-3-0	의과학과
	생체지표증개연구 (M1932.001000) 3-3-0	의과학과
	시스템의학입문 (M1932.003400) 3-3-0	의과학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방법론 (M1932.003100) 3-3-0	의과학과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활용한 비용효과분석 (806.645) 3-3-0	의과학과

※ 인정교과목에 대해서는 각 과정 운영위원회의 추가심의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추가사항은 융합전공 혁신의과학 전공 홈페이지(<https://imed.snu.ac.kr/>)의 공지사항을 확인바랍니다.

IV

논문제출 자격시험



IV — 논문제출자격시험

1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8조(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제9조(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시험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2020.4.제정]

2 응시자격

1) 종합시험 응시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종합 시험	석사과정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박사과정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통산인정학점 포함)
	석·박사통합과정	본교 대학원 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2) 공통사항

- (1) 기 시행된 시험에서 일부 불합격과목이 있는 학생은 그 불합격과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2) 안전환경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제한에 따라, 신청 시 안전환경 신규 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기준

1)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과정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석사	영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 선택가능)	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박사	영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 선택가능)	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1) 영어시험: 입학 시 의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점수 [개정TEPS 298점, 기존TEPS 551점, TOEFL(IBT) 88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글로벌인재 특별전형, 정부초청 장학생 등)은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2년 이내에 취득한 의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 (2)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교무처 주관으로 별도 시행함
- (3) 외국인학생의 국적이 미국(또는 영어를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일 경우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응시해야 함

2) 종합시험 시험방식

- (1) 구술고사 또는 논문심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하나 전공(교실)에 따라 구술고사 100%나 논문심사 100%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함(v.학위논문심사 참조)
- (2) 석사
 - 구술고사: 전공지식 관련 구술고사로, 각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후 평가서를 제출함
 - 논문심사: 전문학술지(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에 대한 요약발표

(3) 박사 : 전공별 연구계획서 심사 여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지도교수 자체 평가
- 연구계획서 미심사 전공: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요약발표 또는 구술고사

※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문학술지는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한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인정하는 논문은 Original Article, Letter, Brief communication, Meta analysis, 학위 논문 주제와 연관되는 Review Article에 한함. (2021. 2학기부터)

* 이 외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별도 승인이 필요함

※ 모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완료한 대상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집니다(행정실을 통하지 않은 지도교수와의 개별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정해진 기간(보통 2월, 8월)
- ② 마이스누 온라인 신청(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신청 - 종합시험신청 - 신규 - 신청 - 신청과목정보 - 추가 - 신청시험과목구분 - 세부전공시험 선택(비고란에 논문 or 구술 입력) - 저장 - 수험표 출력)
- ③ 제반서류 행정실에 서면 제출

4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안내

1) 시행방법

- (1)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학문분야별로도 인문·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2) **시험 면제:**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2) 구술고사 대체

- (1)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한번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국어 관련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할 수 있음
- (2)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 60점 이상, 박사 70점 이상

5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신청 → 신청 후 서류 제출

2) 공지시기

-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V

학위논문심사



V 학위논문심사

1 논문심사 주요 절차

1) 의학과 및 협동과정

(1) 석사과정

- 신청기간: 1학기는 4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기간에 심사용 논문과 신청서를 제출
- 논문심사료: 10만원

(2) 박사과정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공별로 4가지 트랙(A-A, A-B, B-A, B-B)으로 나누어져 아래 절차에 의거 시행됨

A형	B형
① 연구계획서 심사 ② 논문제출자격시험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원저 논문 지도교수 자체평가) * ①과 ②의 순서는 상관없음	① 연구계획서 심사 미실시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원저 논문 요약발표 또는 구술고사)
A-A형	B-B형
A-B형	B-A형
A형	B형
-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위원회가 확인한 경우 학술지 출판 이전에 심사용 제출논문만으로 심사 진행	- 본심사 제출 논문은 국제저명학술지에 피심사자가 제1저자로서 게재한 내용을 담아야 함 - 학술지 논문의 상향 기준은 전공 단위 요청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름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문학술지: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한함
- 논문심사의 국제저명학술지: SCI(E)/SSCI/AHCI 등재 학술지에 한함

● 전공별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박사논문 심사 유형

번호	전공(학과)	석사 논자시 유형		박사논문 심사 유형	비고
		원저논문 요약발표	전공지식 구술고사		
1	해부학	○	○	B-B	
2	생리학		○	B-B	의과학과 유형에 따름
3	생화학		○	B-B	의과학과 유형에 따름
4	병리학	○	○	B-B	
5	약리학	○	○	A-A	
6	미생물학	○	○	A-B	
7	예방의학	○	○	A-A	
8	열대의학	○	○	B-B	
9	인문의학	○	○	A-A	
10	법의학		○	A-A	
11	의료관리학		○	A-A	
12	의공학*	○	○	B-B	
13	의학교육학	○		B-A	
14	내과학	○	○	A-A	
15	외과학	○	○	A-B	
16	산부인과학	○	○	A-A	
17	소아과학	○	○	A-A	
18	정신과학	○	○	A-B	
19	신경과학	○	○	A-A	
20	피부과학	○		A-A	
21	정형외과학	○	○	A-B	
22	흉부외과학*	○		A-B	
23	신경외과학	○	○	B-B	
24	비뇨의학	○	○	A-B	
25	이비인후과학	○		A-B	

번호	전공(학과)	석사 논자시 유형		박사논문 심사 유형	비고
		원저논문 요약발표	전공지식 구술고사		
26	안과학	○	○	B-B	
27	영상의학	○	○	B-B	
28	마취통증의학	○	○	A-B	
29	성형외과학	○	○	A-B	
30	방사선종양학		○	A-B	
31	검사의학	○	○	A-A	
32	재활의학	○	○	A-B	
33	핵의학	○	○	A-A	
34	가정의학	○	○	A-B	
35	응급의학		○	B-B	
36	중개의학		○	A-A	
37	(협)임상약리학	○	○	A-B	
38	(협)종양생물학	○	○	A-A	
39	(협)의료정보학		○	A-B	
40	(협)줄기세포생물학	○	○	B-A	

※ 의공학전공: 논자시와 본심사 논문은 서로 다른 논문으로 제출해야 함

※ 홍부외과학전공: 2025년 1학기부터 “원저논문 요약발표 또는 전공지식구술고사” 가능

● 박사학위 논문심사 절차(2012학번부터 적용)

연구계획서 심사 (A-A형, A-B형 만 해당)	학위논문심사
① 자격: 입학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② 신청기간: 1학기(5월 말), 2학기(11월 말) ③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 계획서 (PDF)-온라인제출 ④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기 통과된 연구계획서와 연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① 자격: 박사수료 또는 예정자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자 ② 신청기간: 1학기(4월 중순), 2학기(10월 중순) ③ 제출서류: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타교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연구윤리 준수 사항 자체점검표 1부 - 심사용 논문(PDF)-온라인제출 -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 검색 결과 확인서 1부 ※ 논문심사 A-B형 및 B-B형: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 예정증명서로 대치가능) 추가 제출 학술지등재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위논문과의 연관성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름. ※ 논문심사 A-A형 및 B-A형: 논문심사위원회가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논문심사료: 30만원 ※ 2023년부터 대학원생 건전학술활동 기반 조성 방안으로 *제출 서류가 추가됨 ④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 의과학과

(1) 논문제출자격시험

과정		석사	박사, 석박통합
응시자격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지원시기		매 학기 시작 약 1~2주일 전(2월 말, 8월 말)	
시험과목	외국어시험	영어(입학 시의 TEPS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가능)	
	종합시험	전공지식 구술고사	*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원저 논문 요약발표 또는 구술고사 ※ 논문제출자격시험 접수기간에 마 이스누 온라인 신청과 제반서류 (신청서, 해당 논문요약본)의 서면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배점 및 합격기준		외국어 시험 - TEPS 298점 이상 - TOEFL IBT 88점 이상 - 종합시험 70점 이상	외국어시험 - TEPS 298점 이상 - TOEFL IBT 88점 이상 - 종합시험 70점 이상
신규 안전환경교육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신규 안전환경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문학술지: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한함

(2) 논문심사

석사	본논문심사 - 신청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4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 신청시기 : 4월 중순, 10월 중순 - 신청기간에 심사용 논문과 신청서를 제출 - 논문심사료 : 10만원	
박사 (B-B)	1단계 : 연구계획서 심사 미 실시 2단계 : 논문제출자격시험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원저 논문 요약발표 또는 구술고사)	2단계 : 본논문심사 - 본심사 제출 논문은 *국제저명학술지에 피심사자가 제1저자로서 게재한 내용을 담아야 함 - 학술지 논문의 상향 기준은 전공 단위 요청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름
* 논문심사의 국제저명학술지 : SCI(E)/SSCI/AHCI 등재 학술지에 한함		

단, 의과학과 박사학위논문 본심사를 개시하려면 아래 ① 또는 ②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학위심사 신청 이전에 충족해야 한다.

- ①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논문(들)의 IF 합이 10 이상(아래 요건 중 택일)
- 1.1 IF 10 이상 SCI등재 원저논문 1편
 - 1.2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의 IF 합이 10 이상
 - 1.3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 + SCI등재 종설논문 1편의 IF 합이 10 이상 (종설논문은 1편까지만 인정)
- ②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원저논문이 2편 이상이되, 그중 1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승인) 완료
- ※ 원저논문: 협의의 Original article에 한함
 -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함
 - ※ 공동 제1저자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 학위논문은 반드시 국제저명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게재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 특수한 상황(예: 최근 출판이 개시된 IF 발표예정 우수학술지(Nature, Cell, Science 자매지 등), IF 10에 근접한 학술지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는 의과학과 학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SCI 분야별 %는 학생의 학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인정함

3) 임상 의과학과

(1) 석사과정

- 신청자격: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 신청기간: 1학기는 4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기간에 심사용 논문과 신청서를 제출
- 논문심사료: 10만원

(2) 박사과정(A-A형)

- 2021년 1학기부터 전공별로 4가지 트랙(A-A, A-B, B-A, B-B)으로 나누어져 아래 절차에 의거 시행됨
- 임상 의과학과는 A-A형을 채택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학위논문 심사의 순서로 논문심사와정이 진행됨
- 논문심사 절차

연구계획서 심사	학위논문 심사
① 자격: 입학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② 신청기간: 1학기(5월 말), 2학기(11월 말) ③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 계획서 5부 ④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 통과된 연구계획서와 연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① 자격: 박사수료 또는 예정자로 연구계획서 심사 및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② 신청기간: 1학기(4월 중순), 2학기(10월 중순) ③ 제출서류: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타교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연구윤리 준수 사항 자체점검표 1부 - 심사용 논문 6부 ※ 논문심사 A-A형: 논문심사위원회가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이 국 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논문심사료: 30만원 ④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4) 휴먼시스템의학과

(1) 석사과정

- 신청기간: 1학기는 4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기간에 심사용 논문과 신청서를 제출
- 논문심사료: 10만원

(2) 박사과정(A-B형)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 절차에 의거하여 (A-B)형으로 시행되며, 연구계획서 심사→ 학위논문 심사의 순서로 논문심사과정이 진행됨(의학과 전공별 4가지 트랙 참조)
- 박사학위 논문심사 절차

연구계획서 심사	학위논문심사
① 자격: 입학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② 신청기간: 1학기(5월 말), 2학기(11월 말) ③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 계획서 5부 ④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기 통과된 연구계획서와 연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① 자격: 박사수료 또는 예정자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자 ② 신청기간: 1학기(4월 중순), 2학기(10월 중순) ③ 제출서류: -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등재논문 1부 - 논문심사요구서 1부 -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타교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연구윤리 준수 사항 자체점검표 1부 - 심사용 논문 6부 ※ 논문심사 A-B형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등재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연관성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름. ※ 논문심사료: 30만원 ④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 의료기기산업학과

(1) 석사과정

-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 신청기간: 1학기는 4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기간에 심사용 논문과 신청서를 제출
- 논문심사료: 10만원

(2) 박사과정(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B-A형

논문제출자격시험(B형)	학위논문심사(A형)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원저 논문 요약 발표 및 구술고사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 위원회가 확인한 경우 학술지 출판 이전에 심사용 제출 논문만으로 심사 진행

-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문학술지: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한함
- ※ 논문심사의 국제저명학술지: SCI(E)/SSCI/AHCI 등재 학술지에 한함
- ※ 원저논문: 협의의 Original article에 한함

● 논문심사 절차

구분	학위논문심사
① 심사 신청 및 심사료 납부	· 신청기간: 1학기(4월 중순), 2학기(10월 중순) · 논문심사료: 30만원
② 심사신청 제출서류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타교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심사용 논문 6부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심사용 논문 6부 ※ 논문심사 B-A형: 논문심사위원회가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③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

연구윤리 준수

1) 학위논문(본논문) 심사 신청 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

2) 기관윤리위원회 심의

- (1) 학위 논문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학위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관윤리위원회에 계획서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하며, 승인 사실은 청구 논문 목차 중 “연구 방법”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2) **인간대상 연구**(임상시험, 인체유래물 연구, 의무기록 연구, 설문조사 등)의 경우 **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문의: 2072-0694, 2266).
- (3) **동물 또는 동물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문의: 880-5152).
- (4) **유전자변형생물체, 감염성 물질 및 기타 생물학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연구**의 경우 **생물안전위원회(IBC)**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문의: 880-5508).

3

연구생 등록

- 1)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기에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하며,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 신청이 불가함.**
- 2) **수납기간:** 1학기는 2월말 경, 2학기는 8월말 경(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확인)
- 3) **납부금액:** 학기당 200,000원

4

이학 석·박사 학위 수여 제도

1) 의학과 및 의과학과 학생이 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협동과정의 경우 이수 의무 없음).

2) 이학석사 학위수여

(1) 교과목 이수 기준

- 자연과학대학 대학원과정 교과목 또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3.0 이상

(2) 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학위 취득 1년 전

- 자연과학대학의 전임교수를 논문지도 자문교수로 선정
- 학위논문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이학박사 학위수여

(1) 교과목 이수 기준

- 자연과학대학 대학원과정 교과목 또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통합과정생의 경우 24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3.0 이상

(2) 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학위 취득 1년 전

- 자연과학대학의 전임교수 또는 겸무교수를 논문지도 자문교수로 선정
- 논문심사위원 5인 중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자연대학 전임교수 또는 겸무교수(자연대 전임교수는 반드시 1인 포함)로 구성

(3) 기타 요건: 학위논문 심사 종료 이전에 해당 전문분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두 편(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이상 게재(또는 게재 예정)되어야 함

5

의과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운영규정

1) 석사 학위논문 심사

(1) 논문 제출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에 합격한 학생
- 4회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에 규정된 석사학위논문 제출 기한(수료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경과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2) 논문 제출 허용 기한: 과점수료 후 4년 이내(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3) 논문심사 절차

- 논문심사계획 공고: 전공(교실)에 공지 안내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고(1학기 3월, 2학기 9월)
- 심사신청 방법: 포털마이스누에서 논문심사 신청 후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서류제출
- 심사용 논문접수 및 논문심사료 징수
 - 논문심사료: 10만원
 - 심사용 논문 :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석·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작성
 - 대학원 연구생 등록(수료생에 한함): 20만원
-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함.
 - ※ 이학학위를 받고자 신청한 학생은 「학위명칭 변경사유서」를 작성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협동과정생 제외).

- 논문요지 발표: 각 주임교수 또는 협동과정 책임교수의 책임 하에 요지발표회를 개최함.
-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심사: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B 이상)이 있어야 합격
 - 최종 논문심사 시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에게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대학원학사행정실에 제출함.
- 온라인 논문 제출
 - 원문파일 제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이용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에서 제외됨

2) 박사 학위논문 심사

1)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

- ① **구성:** 지도교수 1명, 본 대학교수 3명, 교외 전문가(서울대 제외 교수)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선정시기 및 방법

- **본 대학 교수**
 - 논문심사 A-A, A-B 트랙 전공(연구계획서 심사 실시 전공): 입학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의학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선정
 - 논문심사 B-A, B-B 트랙 전공(연구계획서 심사 미실시 전공): 본논문심사 접수 시 선정
 - 지도교수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6명의 교수를 복수 추천(소속교실 3인, 타교실 3인)
 -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명을 선정(위원장 포함)
 - 본 대학에 적합한 교수가 없을 때에는 타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추천 가능
 - 대학원학사위원회는 추천심사위원이 연구주제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도교수와 선정위원 3인(위원장 포함) 총 4인이 학위논문심사까지 진행함.
-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심사위원 변경 가능

- **교외 전문가(서울대 제외 교수)**
 - 본논문심사 접수 시 선정
 - 지도교수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2명의 교외 전문가를(타 대학에서) 추천
 - 대학원학사위원회는 2명 중 1명을 선정
 - 지도교수와 선정위원 3인(위원장 포함), 교외 전문가(타교위원) 1인 총 5인이 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함.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박사과정 연구계획서 심사 ※ 논문심사유형 A-A, A-B트랙 전공(학과)만 해당

(1) 대상

- **의학과, 협동과정** 대학원생 중 A-A, A-B 트랙 전공(학과) 및 임상 의과학과 학생
- 박사과정 입학 후 6개월 이상(2개 학기 등록자부터) 경과한 학생
- 수료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2) 연구계획서 심사

- **연구계획서 심사계획 공고**: 1학기는 5월 초, 2학기는 11월 초에 각 전공교실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심사신청 및 심사위원 선정**
 - 신청서 제출: 대학원학사행정실
 - 추천 심사위원 4명 중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연구계획서를 배부하여 심사를 진행**
 - ※ 지도교수 1명과 본 대학 교수 3명이 심사하며 선정된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학위 논문 심사 내규에 의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및 졸업논문 심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연구 및 논문작성지도와 심사를 담당한다.
- **연구계획서 심사**
 -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심사위원 및 그 외 참관 희망자 앞에서 직접 발표하여 심사를 받는다.
- **연구계획서 심사결과 보고**
 -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합격, 불합격, 심사연기-6개월 후 재평가, 철회)를 대학원학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연구계획서 제목 및 내용의 변경

- 기 통과된 연구계획서와 연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수정된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박사 학위논문심사(본논문심사)

(1) 논문 제출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에 합격한 학생
-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의과학과 미해당)
- 4회 이상 등록하고 교과학점 36학점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생(석박사통합과정: 6회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에 규정된 박사학위논문 제출 기한(수료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경과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등록을 필한 자

● [의학과 · 협동과정]

① A-A, B-A 트랙

- 학술지 출판 논문이 없더라도 심사 가능
- 단, 해당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야 함(미확인 시 학위논문 수여 불가)

② A-B, B-B 트랙

- 제1저자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논문 1편 이상(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가능)
-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위논문과의 연관성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름.

● [의과학과] B-B 트랙

- 학위논문심사 신청 시, 다음 실적에 해당하는 논문별책 또는 게재예정 증명서(accept notice)를 제출하여야 함(2011학번부터 적용)
- 아래 (1) 또는 (2)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1)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논문(들)의 IF 합이 10 이상
 - 1.1 IF 10 이상 SCI등재 원저논문 1편

- 1.2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의 IF 합이 10 이상
- 1.3 SCI등재 원저논문 2편 이상 + SCI등재 종설논문 1편의 IF 합이 10 이상 (종설논문은 1편까지만 인정)
- (2) 제1저자로 발표 또는 게재 승인된 SCI등재 원저논문이 2편 이상이되, 그중 1편 이상이 SCI category별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승인) 완료.
 -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함
 - ※ 공동 제1저자 논문의 경우에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 특수한 상황(예: 최근 출판이 개시된 IF 발표예정 우수학술지(Nature, Cell, Science 자매지 등), IF 10에 근접한 학술지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는 의과학과 학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SCI 분야별 %는 학생의 학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인정함
 - ※ 의과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에서 발표한 논문도 해당 업적에 포함

● [임상의과학과] A-A 트랙

- 학술지 출판 논문이 없더라도 심사 가능
- 단, 해당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야 함(미확인 시 학위논문 수여 불가)

● [휴먼시스템의학과] A-B 트랙

-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등재논문 1편(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가능)
-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위논문과의 연관성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름
- 학술지 출판 논문이 없더라도 심사 가능
- 단, 해당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야 함(미확인 시 학위논문 수여 불가)

● [의료기기산업학과] B-A 트랙

-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등재논문 1편(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가능)
-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위논문과의 연관성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름
- 학술지 출판 논문이 없더라도 심사 가능
- 단, 해당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야 함(미확인 시 학위논문 수여 불가)

(2) 논문 제출 허용기한: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점수료 후 6년 이내(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3) 논문 심사 절차

- 논문심사계획 공고: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중 각 전공교실에 안내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고
- 논문 제출 예정자 등록: 포털마이스누에서 논문심사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
- 심사용 논문접수 및 논문심사료 징수
 - 심사용 논문 부수: 6부(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석·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라 작성)
 - 논문심사료: 30만원
 - 연구생 등록(수료생에 한함): 20만원
- 교외 전문가(서울대 제외 교수)위원 추천 및 선정
 -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교외 전문가 위원 2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교외전문가위원 1인 선정
 - 지도교수 1인, 본교위원 3인(위원장 포함), 교외전문가 1인 총 5인이 학위논문 심사를 진행함
 - ※ 연구계획서 심사 실시 트랙(A-A, A-B) 전공은 연구계획서 단계에서 학내위원 4인 위촉 후 학위논문 심사 단계에서 외부위원 1인 추가 위촉
 - ※ 연구계획서 심사 미실시 트랙(B-A, B-B) 전공은 학위논문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 5인 위촉
 - ※ 이학학위를 받고자 신청한 학생은 「학위명칭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협동과정생 제외).
- 논문요지 발표 및 예비심사
 - 논문요지 발표: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발표회 1회 개최
 - 논문 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정하여 2회 이상 실시
 -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소정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논문심사 기간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학위수여규정 제25조).
- 논문종심 및 구술고사 실시: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
 - 논문종심: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 구술고사: 종심 시에 실시 평균 70점 이상(단, 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에게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대학원학사행정실로 제출함.
- 보존용 논문 제출(종심통과자)
 - 원문파일 제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이용
 -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에서 제외됨
- 참고사항: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본교 도서관에 보존용 논문을 제출한 것도 공표한 것으로 본다).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학위수여 규정 제27조)

VI

**장학·
연건생활관
(기숙사)·
기타 학생생활**



VI — 장학·연건생활관(기숙사)·기타 학생생활

1

장학제도

1)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학기 말(6월 말~7월 중, 11월 말~12월 중)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방법: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학생행정실로 증빙서류 제출
 - ※ 온라인 미신청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장학제도별로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학제도

- 수업료(등록금) 일부 면제 장학금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전일제 대학원생
 - ※ 다만,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장학금규정 제9조제2항).
-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 ① 대상 및 자격: 학문후속세대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박사과정 재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인정자에 대하여는 본 장학금에 한해서 박사과정 학생과 동일한 대우
 -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3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단, 성적이 미달한 경우 석·박사 학위당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 가능
 -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하인자 단, 퇴직·휴직 관련 증명 서류 제출 시 가능
 - ② 근무시간: 주당 10시간(월 40시간) 이상 최대 20시간(월 8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③ 근무조건: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대학(원)장은 근무시간 시작 전 복무협약을 체결한다.

④ 강의·연구지원장학생의 업무

- 교수의 강의 및 연구보조
- 학생의 수강 지도 및 과제물 처리
- 실험실 관리
- 학생행정 업무 보조 등
- 기타 복무협약에 따라 협의된 사항

⑤ 지급액

-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전액+월정장학금(석사 월 20만원, 박사 월 30만원)
- 대학원 연구생: 월정장학금(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90만원)

⑥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동일인이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금

- ① 선발시기: 매년 1월 중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 ② 선발유형

구분	지원금액(원)
박사과정 수학지원(A형)	2,600만원/연간
박사학위논문 작성지원(B형)	2,400만원/연간
석사과정 수학지원(C형)	1,000만원/연간

●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장학금

- ① 선발시기: 매년 1월 중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 ② 선발유형

구분	지원금액(원)
희소학문분야(A형)	박사과정 2,600만원/연간 박사수료 2,400만원/연간
국책연구분야(B형)	석사과정 1,000만원/연간

* 박사과정 1명은 석사과정 2명으로 환산

※ 대학원 장학제도 현황

구분		장학금액	실무부서
수업료 일부면제장학금		◦수업료(등록금)의 10~50%	의대 학생행정실 (02-740-8039)
인재 양성 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입학금 + 수업료 전액면제 및 월정장학금 - 추천대상: 법인교수 및 특별채용법인전환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 - 신입생, 재학생 월정장학금: 석사 20만원, 박사 30만원 - 연구생 월정장학금: 석사 70만원, 박사 90만원	
	강의연구지원 보조장학금	◦수업료 전액면제 (BK연구장학금 수혜학생인 경우는 50% 지원) - 추천대상: 법인전환/기금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박사과정수학지원(A형): 1,300만원/학기당 ◦박사학위논문작성지원(B형): 1,200만원/학기당 ◦석사과정수학지원(C형): 500만원/학기당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희소학문분야(A형) ◦국책연구분야(B형)	
외국인 학생	글로벌초우수 장학금	◦유형1: 입학금 + 수업료전액 + 월정(120만원) + 항공료 ◦유형2: 입학금 + 수업료전액	의대 국제협력실 (02-740-8928)
	GSFS 장학금	◦등록금: 2년 ◦생활비: 석사 2년, 박사 3년	
	SPF 장학금	◦박사과정 입학금+수업료전액+생활비+항공료 실비 등	

2

연건학생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1) 연건학생지원센터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연건학생지원센터는 연건캠퍼스 학우들의 학습, 적응, 대인관계, 성격, 정서문제를 비롯해 학교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정확한 평가에 기초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정신과적 면담,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를 제공합니다.

- 위치: 교육관 1층 112호 연건학생지원센터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연락처: 02-840-8110, snuyss@snu.ac.kr
- 홈페이지: <https://yss.snu.ac.kr>

가. 개인상담

연건학생지원센터에서는 대인관계, 성격, 정서, 학업문제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과적 면담 및 상담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상담을 원하는 모든 연건캠퍼스 재학생
- 예약방법: 센터메일(snuyss@snu.ac.kr)로 방문 가능 시간대 3개와 상담 주제 적어 보내기

나. 패널조사 “스트레스 관리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검사 및 개인별 피드백”

연건학생지원센터에서는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제고와 고위험군 선별 및 선제적 개입을 위하여 정신건강 패널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및 일시: 본과 1~2학년(1학기)/본과 3~4학년(2학기)
- 방법:
 - 1) 온라인 검사코드 발송을 통한 심리검사(MMPI-2-RF 및 MLST-II) 개별 시행
 - 2) 검사 시행 완료자 대상으로 메일로 해석상담 개별 예약 후 피드백 제공

다. 인성계발 프로그램

연건학생지원센터에서는 연건캠퍼스 학우들의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공감을 부탁해"

- 대상: 연건캠퍼스 재학생 10명 내외
- 신청: 센터에서 발송하는 공지 메일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신청 접수
(https://yss.snu.ac.kr/bbs/content.php?co_id=sympathy)
- 목적: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 행동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 역량을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돕고자 함
- 내용: 1회기: 정서인식 및 표현, 2회기: 타인의 정서 이해 및 생각-감정-행동의 수레바퀴, 3회기: 긍정적 생각의 마술, 4회기: 공감이란 무엇인가, 5회기: 공감을 잘 해주는 의사 되기

2) 정서조절 및 자기이해증진 프로그램 "자기사랑 배우기"

- 대상: 연건캠퍼스 재학생 10명 내외

- 신청: 센터에서 발송하는 공지 메일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신청 접수
(https://yss.snu.ac.kr/bbs/write.php?bo_table=apply_group_counsel&program=cognition)
- 목적: 의과대학 재학생의 부정 정서에 대한 효과적인 조절능력 및 자존감 향상 도모
- 내용: 1회기: 프로그램 개관, 2회기: 타인의 정서 이해 및 생각-감정-행동의 수레바퀴, 3회기: 심리도식과 핵심신념, 4회기: 핵심신념 변화하기1, 5회기: 핵심신념 변화하기2

3)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챙김 요가명상 프로그램 "나에게 귀 기울이기"

- 대상: 연건캠퍼스 재학생 10명 내외
- 신청: 센터에서 발송하는 공지 메일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신청 접수
(https://yss.snu.ac.kr/bbs/content.php?co_id=yoga2)
- 목적: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다양한 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돕고자 함
- 내용: 1회기: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 2회기: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1, 3회기: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2, 4회기: 신체감각에 대한 마음챙김1, 5회기: 신체감각에 대한 마음챙김2, 6회기: 신체 감각에 대한 마음챙김3, 7회기: 느낌/감정에 대한 마음챙김, 8회기: 생각에 대한 마음챙김, 9회기: 일상에서의 마음챙김1, 10회기: 일상에서의 마음챙김2

4) 의대생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 대상: 의학과 재학생 10명 내외
- 신청: 센터에서 발송하는 공지 메일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신청 접수
(https://yss.snu.ac.kr/bbs/write.php?bo_table=apply_group_counsel&program=communication)
- 목적: 의대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 증진과 대인관계 및 의사-환자 관계 향상
- 내용: 1회기: 오리엔테이션, 2회기: 정확한 의사소통, 관심 기울이기, 3회기: 의사소통 구체화하기, 4회기: 공감하기, 직면하기, 5회기: 종합실습 및 마무리

3 연건생활관(기숙사) 입주자 선발

1) 신청안내

- 매년 11월 말~12월 초 연건생활관 홈페이지(<http://meddorm.snu.ac.kr>) 및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 후기 신입생의 경우 여석 산정하여 7~8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

2) 모집군별 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대학원 생활관 2인실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2.7 이상 3) 지방 거주 우선	1) 입주원서(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3) 성적증명서(해당자만) 4)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서류심사
대학원 생활관 1인실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총장발령 Post-Doc과정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2.7 이상 3) 지방 거주 우선	1) 입주원서(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3) 성적증명서(해당자만) 4)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5)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서류심사
대학원 생활관 가족실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총장발령 Post-Doc 과정 중 기혼자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2.7 이상 3) 지방 거주 우선 4) 서울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는 자	1) 입주원서(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3) 성적증명서(해당자만) 4)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5) 본인과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6) 결혼증명서 7)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서류심사
국제생활관 1인실 및 가족실	1) 본교 외국인 학생 2) 외국인 대학원 연구생 및 총장발령 Post-Doc 과정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여석 발생 시 내국인 입주 고려) 4)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2.7 이상 * 가족실은 기혼자만 신청가능	1) 입주원서(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3) 성적증명서(해당자만) 4)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5)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6) 본인과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가족실 지원자만) 7) 결혼증명서(가족실 지원자만)	서류심사
비고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 입주원서는 생활관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2. 주민등록등본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3.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족실만 해당) 4.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1통 (신입생, 신분 변동자 및 Post-Doc일 경우에만) 5.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1통(외국인, 포스닥 제외) 6. 우선선발자 해당 증빙서류 1통(온라인 신청 시 해당사항 입력자만) - 국가유공자자녀,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수급자자녀 ※ 제출서류 상세 내용은 공지 참조		

4

학생증(S-CARD) 발급

1) 신청기간

- 신입생: 3월 2일, 9월 1일 개강 이후 수시 신청
- 재학생: 수시 신청

2) S-CARD 종류 및 발급절차

구분	기 능	발급절차	비 고
카드형 S-CARD (금융기능 제외)	• 신분증 • 도서관, 건물출입 • 도서관 좌석배정, 도서대출·반납 • 전자 출결 • SNU머니(학내전용 사이버머니)	• 학생행정실(행정관 110호)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발급 알림 문자 받은 후 방문 수령	• 발급기간 약 일주일 소요
카드형 S-CARD (금융기능 포함)	• 신분증 • 도서관, 건물출입 • 도서관 좌석배정, 도서대출·반납 • 전자 출결 • SNU머니(학내전용 사이버머니) - 식당, 매점, 복사/프린트 결제 금융기능(체크카드) • 금융기능(체크카드) - 후불 교통카드 - 주요혜택(할인한도 및 기준은 우리카드에서 확인)	• 신분증 지참 후 우리은행(원남동지점 또는 대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발급 알림 문자 받은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수령	• 증명사진(3×4)은 입학지원서 사진으로 대체하며, 교체 희망자는 student@snu.ac.kr 로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기재하여 사진파일 송부
모바일 S-CARD	• 카드형 S-CARD(ID기능)와 기능 동일 • '서울대학교'앱 로그인 후 중앙 하단 신분증 버튼 클릭	• S-CARD 발급 → S-CARD App 다운로드 및 설치	• 서울대 포털 계정 필수

구분	기 능	발급절차	비 고
USIM S-CARD	◦ 카드형 S-CARD(ID기능)와 기능 동일 - 주요시설물 출입 시 '서울대학교' 앱 실행 없이 휴대폰을 바로 접촉하여 사용 - 모바일 S-CARD 발급 시, 추가발급 ※ 안드로이드폰 및 이동통신 3사 (SK, KT, LGU+) 가입자만 사용가능(아이폰 또는 알뜰폰 가입자 불가)		

※ 모바일 및 USIM S-CARD는 입학 후 1개월 이내 카드형 S-CARD를 발급받아야 계속 사용 가능

3) S-CARD 사용등록

- 발급된 S-CARD는 <http://scard.snu.ac.kr> 또는 모바일 앱(S-CARD)에서 등록 후 사용가능

4) 별도 출입등록 안내

- S-CARD 사용등록 후 도서관, 교육관, 학생관은 자유 출입가능
- 연구관, 융합관, 의과학관 출입등록: 행정관 105호 시설행정실 (740-8021)
- 연건생활관(기숙사) 출입등록: 연건생활관 행정실 (740-8059)

5) 분실등록: 분실 시 학교 및 우리카드 양쪽에 즉시 신고

- 학교(ID 기능정지): S-CARD 홈페이지(<http://scard.snu.ac.kr>)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 우리카드(금융기능정지): 콜센터(1588-9955)

5

학생건강검진 실시 및 연건분소 안내

1) 대상

-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신입생, 휴학생포함), **연구생**
- 연 1회 무료

2) 일정 및 장소

- 매년 검진일정을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전공지 후 진행
- 정해진 기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후 관악캠퍼스 보건진료소에서 상시검진 가능
- 후기 신입생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연건캠퍼스 검진 또는 개별적으로 보건진료소 홈페이지에서 학생검진 예약하여 관악캠퍼스 보건진료소에서 검진 가능
※ 관악 보건진료소에서 개별검진으로 진행 시 홈페이지 예약 필수

3) 검진 전 준비사항, 검진 항목

- 준비사항: 검진 전 공복 12시간 유지, 온라인 건강설문 작성
- 검진항목: 흉부X선 검사, 혈압, 신체계측(비만도/허리둘레), 시력, 소변(당/단백), 혈액검사(빈혈, 일반혈액, 신장기능, 요산, 공복혈당, B형/C형간염, 간기능, 콜레스테롤 4종 검사)

4) 기타

- 학생검진 이외 진료, 처방, 투약, 소독 등 처치, 무료 독감검사, 예방접종, 기숙사검진, 방사선 종사자 검진, 유학용검진, 무료 인바디검사 등 연건캠퍼스 보건진료소 연건분소(의대 교육관 1층 109호) 이용가능 (전화문의: 740-8108)

6

증명서 발급

1) 인터넷 발급(수수료 없음)

- 발급 가능 대상: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신청방법: 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증명발급 → 인터넷 발급

2) 증명서 종류

- 국·영문 모두 발급 가능

종류	비고
성적증명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 "F" 성적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을 표기 - "F" 성적을 재수강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에 "F" 성적을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
학위수여증명서	석사·박사과정의 학위 취득자 - 졸업증명서는 학사과정 졸업자만 발급 가능
수료증명서	석사·박사 수료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석사·박사과정 학생으로 논문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논문 심사 중인 자
수료예정증명서	석사·박사과정 최종 학기에 재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자
재적증명서	입학하여 재적인 사실이 있는 자 - 휴학생, 제적생의 경우에는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입학, 재학, 휴학, 제적, 복적, 재입학 등이 기재 됨)
연구생증명서	수료 후 논문 제출을 위하여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3) 기타 발급 방법(수수료 부과)

- 방문신청: 관악캠퍼스 대학본부(행정관 60동) 1층 학사과 증명창구
(연건캠퍼스 행정실에서는 증명서 발급 불가)
※ 씰링(Sealing, 봉인)처리가 필요한 경우 학사과 증명창구에 신청
- 팩스민원: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로 증명서를 FAX로 전송

7

Pre D-Day X SNU Medicine 행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창업 및 초기 스타트업 지원 행사로 의과대학 대학원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최대 3억 투자 검토 등) 합니다.
- 의생명과학 연구자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고자 매년 12월 중 개최됩니다.

8

의과대학 내 주요 연락처

내용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의학과, 협동과정	입학	대학원학사행정실 (행정관 308호)	740-8428	http://medicine.snu.ac.kr
	등록, 수강신청, 수업, 휴·복학, 성적	교무행정실 (행정관 110호)	740-8028	
	지도교수, 수료/졸업, 학점통산인정, 연구생등록, 논문심사	대학원학사행정실 (행정관 308호)	740-8033	
의과학과		대학원학사행정실 (행정관 308호)	740-8094	https://biomed.snu.ac.kr
임상의과학과		대학원학사행정실 (행정관 308호)	740-8907	http://cscience.snu.ac.kr
휴먼시스템의학과		대학원학사행정실 (행정관 308호)	740-8131	http://hmsysmd.snu.ac.kr
의료기기산업학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서울대학교 대학원	031- 787-8889	https://mdd.snu.ac.kr/
장학 및 학자금대출		학생행정실 (행정관 110호)	740-8039	http://medicine.snu.ac.kr
S-CARD(학생증)		학생행정실 (행정관 110호)	740-8039	http://medicine.snu.ac.kr
연건생활관(기숙사)		연건생활관 (치과병원 옆)	740- 8056, 8059	http://meddorm.snu.ac.kr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	740-8044	http://medlib.snu.ac.kr
보건진료소 연건분소		보건진료소 연건분소 (교육관 109호)	740-8108	http://health4u.snu.ac.kr
안전환경 교육		연구안전관리실 (행정관 109호)	740- 8020, 8384	http://rsis.snu.ac.kr
전문연구요원		학생행정실 (행정관 110호)	740-8039	http://medicine.snu.ac.kr
예비군		예비군대대 (의대 정문 옆 별도 건물)	740-8186	

VII

관련 규정



VII — 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시행 2021. 10. 27.]

[서울대학교학교지침, 2021. 10. 27.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516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신청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하 “학위수여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 제2외국어)에 합격한 자
2.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3.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15. 9. 24., 2020. 9. 1.]
5.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개정 2015. 9. 24., 2020. 9. 1.]
6.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7. 기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제3조(신청 및 심사대상자 결정) ① 학위논문(실적심사)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심

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또는 논문심사 요구서
2. 지도교수 추천서(박사과정에 한함)
3.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4. 논문심사위원 명단 [개정 2010. 12. 10.]
5. 심사용 청구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6.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개정 2010. 12. 10.]
7. 기타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서류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논문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 후 그 결과를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논문지도교수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①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1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 주임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9. 1.]

[제목개정 2020. 9. 1.]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 2008. 11. 13., 2009. 7. 7., 2015. 9. 24. 2020. 12. 2., 2021. 10. 27.]

1. 석사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겸무교원 및 기금교원으로 한다.
2. 박사과정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겸무교원 및 기금부교수 이상의 기금교원으로 한다. 다만,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 소지한 조교수, 기금조교수도 할 수 있다.
3. 의과대학장은 의과대학 임상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중 교육 및 연구성과가 탁월한 자를 의과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 ② 삭제 [2020. 12. 2]
- ③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기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임상교원, 객원교원, 외래교원, 석좌교수,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원으로 하되 자격은 제1항에 준한다. [개정 2015. 9. 24., 2020. 4. 3., 2020. 12. 2, 2021. 10. 27.]

제6조(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 등) ①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② 기타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선정절차, 학생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논문심사위원

제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2020. 12. 2.]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2020. 12. 2.]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명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명 이상, 박사과정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9. 1.]

② 「학위수여 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논문 제출자 1명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1명 이상의 위원), 박사과정은 5명 이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명 이상의 위원)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0. 9. 1., 2020. 9. 2.]

③ 각 대학(원)의 장은 1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의 위촉결과를 박사과정에 한하여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 및 평가방법 등

제10조(논문요지 발표, 예비심사 및 본심사) ①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⑥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분·역본·모형·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평가방법) ① 석사학위 논문은 “A(심사위원 전원 찬성)”, “B(심사위원 2/3 찬성)”, “C(심사위원 1/3 이하 찬성)”으로 평가하되, 논문심사 합격은 논문성적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평균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평균 70점 이상(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는 7월말, 2학기는 1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체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심사기간 연장) ① 「학위수여 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대학(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사과정 논문심사자에 한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심사기간 연장 승인 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심사위원 변경시 각 대학(원)의 장은 그 결과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결과에 따른 다음 학기 심사 절차) 학위논문심사 판정결과(“철회”, “심사기간연장”, “불합격”)에 따른 다음 학기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문서의 보관)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심사 관련 문서를 매학기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자체적으로 보관하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장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

제15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학칙 제89조(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12. 2.]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 ⑤ 학위수여대상에서 유보된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등록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의 제출논문은 개명으로 인해 논문 제출자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중앙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 ⑧ 각 대학(원)의 장은 자체 보관용으로 학위논문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 규정」 제27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
 -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4.]

제6장 학위수여 및 취소

- 제17조(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대학(원) 내 학과간 또는 대학(원)간 협의를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②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종별변경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③ 제2항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에 대한 논문심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심사대상자 명단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결과 보고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 2020. 9. 1.]

제18조(논문심사 합격자중 수료요건 등 미충족자 처리) ① 논문심사 합격자중 「서울대학교 학칙」 제 78조(과정 이수 학점 등), 제83조(취득학점의 인정) 및 기타 각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대상 탈락자로 간주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하여 해당 논문심사결과를 철회조치하고, 다음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다시 취하도록 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 취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7장 논문심사료

제20조(논문심사료 징수 및 수당 지급)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논문심사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9. 1.]

② 논문심사료의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논문심사 수당은 학위 논문심사를 마치고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④ 각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교외전문가에 대하여 논문심사 수당이외에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여비명목으로 법인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제21조(논문심사료 환불) ① 논문심사대상자가 논문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 논문심사진행이 어려워 철회를 요청한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논문심사위원 위촉 전에 한하여 논문심사료를 환불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제1항의 환불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교무과로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22조(논문심사료 징수 면제)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중 직전학기에 심사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위원 교체시 새로이 선정된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수당은 각 대학(원)에 배정된 법인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받은 자는 다음 학기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0. 9. 1.]

③ 경영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국제개발정책학과) 및 의학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2011. 3. 31.]

부 칙 <제00015호, 2021. 10.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다음학기 심사 절차

구 분	내 용	다음학기 심사절차 (세부 절차 하단 참조)	전학기 논문의 유효 여부	비 고
가. 철회 조치 (석사, 박사과정 공통)	① 논문심사 등록후 논문을 제출하 지 않은 경우 ② 논문내용의 일부 보완이 요구되 는 경우 ③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었으나 당해 학기 학위수여에서 탈락될 것이 확정 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논문의 동질성 유지 가능	논문제출 마지막학기 에는 철회조치 불가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 기간연장만 신청)
나. 심사기간 연장 (박사과정만 해당)	논문내용의 일부 보완에 1학기 논문심 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논문제 출기한 내 또는 마지막 학기에도 1 학기에 한하여 연장 가능)	㉢, ㉤~㉡	상 동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연장승인 신청으로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 위원회에서 승인
다. 불합격	① 논문내용이 부실하여 다음학기에 반드시 논문제목과 내용을 변경하여 논문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가, 나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논문의 동질성 유지 불가	

※ ㉠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서류 제출 ㉡ 논문심사로 납부 ㉢ 논문심사 대상자 명단 보고 ㉣ 논문심사위원 선정 ㉤ 논문(예비)심사, 종심 ㉥ 논문심사 결과 보고 ㉦ 보존용 논문 제출

【별표 2】

논문심사료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

구 분	1인당 수납액	1인당 심사료 지급액		심사위원 수
		위원장	위원	
석사	100,000원	38,000원	31,000원	3인
박사	300,000원	80,000원	55,000원	5인

☞ 1994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1994.3.24)

Guidelines for Thesis Examination and Degree Conferral for Graduate Students

Enacted : 2008. 07. 17

Revised : 2008. 11. 13

2009. 05. 14

2009. 07. 07

2009. 12. 02

Article 1 (Purpose) The following guidelines were made to provide graduate students with details regarding the thesis examination and degree conferral.

Chapter 1.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for Thesis Examination

Article 2 (Qualification for Thesis Examination)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only students recommended by an academic advisor and meeting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qualified for thesis examination:

1. Students who passed the thesis submission qualification examinations (Comprehensive Examination, English Examination, and Foreign Language Examination for the Second Foreign Language).
2. Students who earned or are about to earn credits required by each college by the end of the semester during which they are currently courses.
3. Students who have submitted their theses by the deadline (within 4 years for master's degree and 6 for doctoral degree).
4. Based on Article 9 Clause 2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students who have been received approval for an extended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ir theses.
5. Students who may submit their theses according to Article 9 Clause 4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6. Those who having completed their graduate studies have already been registered as graduate researchers.

7. Students who satisfy other conditions, established by each college, for the thesis examination.

Article 3 (Application and selection of students whose theses are to be evaluated) ① In order to have their theses evaluated, a student needs to pay a set fee each semester and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by the deadline. The documents need to be approved by an academic advisor and submitted to the Dean of a college after the Chair of the student's relevant department/division has reviewed them.

1. Request form for thesis examination
2. Recommendation letter by academic advisor (Ph.D. students only)
3. Resume (Ph.D. students only)
4. Recommendation letter by a thesis examiner
5. The thesis to be evaluated (3 copies for master's degree and 5 for doctoral)
6. Other documents that each college requires

②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select students, among those who have turned in required documents mentioned in Clause 1, subject to taking an examination for their theses. The Dean then must report, concerning the selected students,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by the end of April and end of October of 1st and 2nd semester respectively.

Chapter 2. Academic Advisor

Article 4 (Selection of academic advisor) According to Article 4 Clause 2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only one academic advisor is selected for each student. However, depending o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maximum of two academic advisors may be jointly selected for a student.

1. The thesis is written on a topic that requires advice from a professional expert outsid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 An agreement has been made with other Korean universities, foreign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regarding joint degree conferral.
3. If there are other reasons acceptable for jointly selecting two advisors.

Article 5 (Eligibility for being an academic advisor) ① The academic advisor must be a full-time professor, professor with additional post, foundation-funded professor, or WCU professor of the department/division to which a student belongs. Eligibility conditions for an academic advisor for each program is as follows <revised on 2009.12.2, 2008.11.13, 2009.7.7>.

1. For master's program, the academic advisor must be an SNU faculty member of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rank, professor with additional post, or a foundation-funded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rank.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sis, the Dean of each college may allow as academic advisors full-time lecturers with a Ph.D., full-time foundation-funded lecturers, or WCU faculty members having the rank of assistant professors or higher.
2. For the doctoral program, the academic advisor must be an SNU faculty member of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rank, professor with additional post, or foundation-funded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rank.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sis, the dean of each college may allow as academic advisors assistant professors with a Ph.D., foundation-funded assistant professors, full-time lecturers with a Ph.D., full-time foundation-funded lecturers, or WCU faculty members having the rank of associate professors or higher.
- ② For students seeking a major in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academic advisor must be an SNU professor, professor with additional post, or foundation-funded professor under the corresponding major in the interdisciplinary program. <revised on 2008.11.13>.
- ③ In cases in which there are two joint academic advisors, they must be SNU professors, professors with additional post, foundation-funded professors, visiting professors, part-time professors, or chair professors. Professors from another Korean university, a foreign university, or an institution with which SNU has formal affiliation are also eligible to become advisors (All eligibility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as in Clause 1).

Article 6 (Selection period of an academic advisor) ①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the selection period of an academic advisor takes place within two consecutive semesters after a student has been admitted to school and the Dean of each college is responsible for selecting the academic advisor. However, for students who do not have an advisor and have withdrawn from school, the advisor must be selected within three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their return to school.

- ② The Dean of each college decides other detailed procedure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an academic advisor and assignment of an appropriate advisor to a student.

Chapter 3. Examiners in the Thesis Examination Committee

Article 7 (Eligibility for being a thesis examiner) ① According to Article 17 Clause 2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the conditions for eligibility as a thesis examiner for master's theses are as follows:

1. SNU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and full-time lecturer with a Ph.D.
2. A non-SNU professional with a Ph.D., recommended by the Chair of a department/division

② According to Article 24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the conditions for eligibility as a thesis examiner for doctoral theses are as follows:

1. SNU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and full-time lecturer with a Ph.D.
2. A non-SNU professional with a Ph.D., who applies to one of the following:
 - a. A faculty member from another school with a position of assistant professor or above
 - b. A researcher from a particular research institution, who has been employed for at least two years in his/her area of research after obtaining a Ph.D.
 - c. Other conditions of eligibility that the Dean of each college authorizes as belonging to a. and/or b. above

Article 8 (Recommendation and organization of thesis examiners) ① The academic advisor recommends to the Dean of each college, after discussing with the Chair of each department/division, the following number of examiners with the eligibilities as detailed in Article 4: three or more for master's and five or more for doctoral (per student).

② According to Article 17 Clause 2 and Article 24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appoint for each student the following number of examiners after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has reviewed a list of candidates: three or more for master's (chair, vice chair, and, an examiner) and five or more for doctoral (chair, vice chair, and three examiners).

③ Each Dean of the college must appoint an examiner who will not discriminate against students depending on their theses.

④ When selecting an examiner for the doctoral thesis examination, at least one professional

expert from another school must be included.

⑤ When the Dean of each college decides to change an examiner for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final appointment, he/she may do so before the final thesis examination date.

⑥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port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of appointed examiners, as in Clause 2 and 5 (for doctoral program), by end of April and end of October of 1st and 2nd semester respectively.

Article 9 (Chair of the Thesis Examination Committee) ① The Chair of the Thesis Examination Committee is appointed from among the thesis examiners.

② An academic advisor, a professor emeritus, or a non-SNU professional expert cannot become a Chair.

③ The Chair has the same rights as the other examiners in terms of reaching a decision during the examination.

④ The Chair superintends the thesis examination and submits to the Dean of relevant college results of the evaluation (after the Chair of relevant department/division has reviewed them), along with summary of each evaluated thesis, within the given deadline.

Chapter 4. Thesis Examination and Evaluation Methods

Article 10 (Presentation of thesis summary, pre-examination, and examination) ①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hold the presentation event at least once for students who have submitted their theses. Either the Chair of each department/division or the Examination Committee Chair must be in charge of the presentation.

② Pre-examinations must be held at least twice for students who have submitted doctoral theses. Either the Chair of each department/division or Examination Committee Chair must be in charge of such pre-examinations.

③ During pre-examinations, the examiner must evaluate the candidates on such areas as their attitude towards research, reasonableness of thesis subject, reasonableness of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research outcomes. The examiner must decide whether it is feasible for the candidate to complete the thesis within the semester he/she is currently taking courses.

④ Examinations are to be held by the given deadline (provided by the Dean of each college) and by the Examination Committee Chair.

⑤ Examinations are held in order to supplement any areas that require further evaluation during the pre-examinations. Any deficiencies in content and overall organization of the thesis are also evaluated during the examinations.

⑥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the examiner may request, if necessary, presenters to turn in any reference materials that may be needed during examinations (such as a handwritten copy of thesis, a copy of each reference document used for the thesis, a physical model that represents the subject of thesis, a sample copy of the original thesis, and other documents that may be used for reference).

Article 11 (Thesis examination and oral examination evaluation methods) ① A master's thesis is graded as "A (all examiners agree)", "B (2/3 of examiners agree)", or "C (1/3 of examiners or below agree)." The passing grade for thesis examination is a grade of "B" or above.

② A doctoral thesis is considered as acceptable when 4/5 of the examiners or above agree.

③ The oral examination is evaluated towards the end of the examination. Out of 100 points, the passing standard for master's program is an average of 60 points or above and for doctoral program an average of 70 or above (4/5 of the examiners must give 70 points or above).

④ The Examination Committee Chair must submit grades for the examination to the Dean of relevant college within the given deadline.

⑤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port final grades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after the 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 Committee has reviewed them, by the end of July and end of January of 1st semester and 2nd semester respectively. However,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ust report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within ten days after the last evaluation date of each semester (according to their own academic schedule).

Article 12 (Extension of thesis examination period) ① According to Article 25 Clause 4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only the doctoral thesis examination period may be extended for one more semester (when, for some reason, the Dean of each college decides that there is a need for an extension).

② Students whose thesis examination date has been postponed must present their theses in the semester in which the actual examination will take place.

③ Additional documents are not required from students whose thesis examination date has

been postponed. However, when an examiner has been changed,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port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on this change within the given deadline.

Article 13 (Examination procedures in the following semester after the thesis examination results are provided)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Withdrawal”, “Extension of examination period”, “Fail”), the following semester’s examination procedures are as indicated in **【Appendix 1】**.

Article 14 (Storage of documents) After evaluations are completed, the Dean of each college stores every semester all documents related to thesis examinations for a maximum period of three years.

Chapter 5. Thesis Submission and Publication

Article 15 (Thesis submission and instructions for non-submitted thesis) ①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thesis examination (hereafter designated as thesis examination passers) need to compose a final draft of their thes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uidelines of their academic advisors and comments provided by the thesis examiners.

② Thesis completion methods, quantity of thesis content, and format of a thesis are provided in 『Methods of Printing and Binding for Master’s/Doctoral Thesis』.

③ Based on Article 80 of the university regulations (Completion of Graduate Program), thesis examination passers must submit four copies of their theses (including files in PDF format) by the given deadline. The thesis must contain an approval stamp or signature of every examiner. The Dean of each college decides the place to which theses need to be submitted.

④ In spite of regulations contained in Clause 3, in cases for reasons deemed legitimate the Dean of each college may postpone the final submission of the thesis by one additional semester. In such cases, the degree is conferred during the semester that the thesis is submitted.

⑤ Students with a standby status for a degree conferral are exempt from submitting documents related to their theses during the next semester.

⑥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port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cases concerning Clauses 3 and 4 by the given deadline of each semester.

- ⑦ The Dean of each college may request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examination, for a copy of their theses for their own internal reference.

Article 16 (Publication of thesis) ① According to Article 28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students who have received a doctoral degree must publish their theses within one year after acquiring the degree. The theses may be published in the following manner: through a printed book, academic publications, other types of public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nes), academic seminars, and other means.

② Despite regulations as in Clause 1, students who have requested for a standby of their theses publication may remain under such status for three years upon approval of the Dean of each college (after the 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 Committee has reviewed on this matter). Some of the reasons for a standby request may include an expected application for a patent, military service, and other acceptable reasons <revised on 2009.5.14>.

③ Based on regulations as in Clause 2, if a student who has previously requested a standby of publication of his/her thesis wishes to additionally remain under such status, then the Dean of relevant college may allow this for up to two years upon approval of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after the 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 Committee has reviewed on this matter) <revised on 2009.5.14>.

④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entral Library of students who have requested for a standby of their theses publication as in Clause 2 and 3 <revised on 2009.5.14>.

Chapter 6. Degree Conferral and Cancellation

Article 17 (Conferral of other types of degree within a department/division) ① According to Article 2 Clause 2 of the degree conferral regulations, if a student wishes to obtain other types of degree within his/her department/division,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ceive an approval from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If an agreement is difficult to reach or there are procedures that go against the regulations, the Dean must reach a mutual agreement with other colleges regarding the matter before receiving an approval from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② Students who wish to receive other types of degrees within his/her department/division must submit, when thesis examiners are appointed every semester, to the Dean of relevant

college an application for a degree change.

③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decide on conferral of other types of degree whenever there are applicants as in Clause 2. The decision is made after the 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 Committee has reviewed the matter. The decision must be reported to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by the given deadline <revised on 2009.12.2>.

④ For master's program, there must be at least 1 out of 3 examiners with the degree of a major related to the evaluated theses. For doctoral program, there must be at least 2 out of 5 examiners with the degree of a major related to the evaluated theses.

Article 18 (Degree conferral standards among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examination and students who have not passed) ① Among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examination, they may not receive a degree due to failure to satisfy Article 69 (Credit requirements) and Article 74 (Approval of credits) of the university regulations as well as other regulations established by each college.

②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scind the thesis examination result for students falling under the strictures in Clause 1 and enact once more the set procedures for examination in the next semester.

③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report to the President of SNU cancellation results as in Clause 2 by the given deadline.

Article 19 (Cancellation of degree) ① If a student who has already received a degree is found to have received it unfairly or there are learned to have been grave flaws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degree, his/her degree may be cancelled.

② If there are students who are subject to cancellation of degree as set forth in Clause 1, the Dean of each college must propose the cancellation to the President (after the 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 Committee has reviewed this matter).

③ The President may declare cancellation upon 2/3 vote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Chapter 7. Thesis Examination Fee

Article 20 (Payment and amount of thesis examination fee) ① According to Article 45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esis examination fees are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payment to thesis examiners afterwards.

② Thesis examination fee required per person and later paid to the examiner is indicated in 【Appendix 2】.

③ Payment is made after the examinations are completed and thesis summary as well as reports on examination results are submitted.

④ During doctoral thesis examination, the Dean of each college may offer other types of payment to examiners that are non-SNU professional experts. Within the fund of the School Support Committee accounts, additional payment such as transportation fees may be paid by the amount required depending on the region they came from.

Article 21 (Reimbursement of thesis examination fee) ① If a student would like fees to be reimbursed and asks for a withdrawal due to difficulty in examining his/her thesis, the Dean of each college may then decide to refund. Reimbursement must be done before examiners are appointed.

② In case that reimbursement occurs as in Clause 1, the Dean of relevant college must submit to the finance team necessary documents (e.g. copy of passbook) for reimbursement.

Article 22 (Exemptions on payment of thesis examination fees) ① Based on Article 12 Clause 1, payment of thesis examination fees may be exempted for doctoral students whose theses examinations have been approved for an extension. However, when an examiner is changed, the payment for the new examiner may be provided within each college's fund of the School Support Committee accounts.

② Based on Article 15 Clause 4, a student is exempted from payment of thesis examination fees if he/she has been approved for submitting his/her thesis during the semester in which his/her examination will take place. Fees for the next semester are exempted.

③ Students seeking a master's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are exempted from payment of thesis examination fees. However, depending on the decision of the dean of each school, a certain amount of payment may be provided to examiners within the school's fund limit <revised on 2009.12.2.>.

Additional Clause (2008. 7. 17)

- ① (Start date) These guidelines are effective from the day they are promulgated.
- ② (Interim measures) While enacting these guidelines, all previous regulations on thesis examination and degree conferral are considered as belonging to the new guidelines.
- ③ (Deletion of related guidelines) The following guidelines are deleted:
 - 1. Handling procedures for students who are about to obtain a degree but have not submitted a thesis yet. [Office of Educational Affairs-3204('07.5.1)].
 - 2.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academic advisor [Office of Educational Affairs-178 ('06.1.9)].
 - 3. Guidelines for the conferral of other types of degree (including those within a department/division) [Office of Educational Affairs 81210-316('02.8.12)].
 - 4. Guidelines for handling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degree conferral for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thesis examination [Office of Educational Affairs 81210-283('93.9.18), 934('06.2.3)].

Additional Clause (2008. 11. 13)

These guidelines are effective from the day they are promulgated.

Additional Clause (2009. 5. 14)

Clause 1 (Start date) These guidelines are effective from the day they are promulgated.

Clause 2 (Interim measures) Article 16 Clause 2 and 3 guidelines are applied to theses of students who have obtained a degree since August of 2009.

Additional Clause (2009. 7. 7)

These guidelines are effective from the day they are promulgated.

Additional Clause (2009. 12. 2)

These guidelines are effective from the day they are promulgated.

[Appendix 1]

Next Semester Examination Procedures following Thesis Examination Results

Description of Results	Conditions for each Description of Results	Next Semester Examination Procedures (refer to bottom of table for further details)	Validity of Thesis from Previous semester	Remarks
A. Withdrawal (for master's and doctoral program)	① Thesis not submitted even after registering for thesis examination ② Necessary adjustments required in the thesis content ③ Passed the thesis examination but degree conferral is (or expected to be) cancelled	㉠ ~ ㉡	Quality of thesis content is maintained throughout	Thesis submitted in the last semester may not be withdrawn (for students seeking a doctoral program, they may only apply for an extension of examination period)
B. Extension of Examination (only doctoral program)	If necessary to extend the examination period due to requirement of further adjustments of thesis content (postponement possible until final submission date or for one more semester)	㉢, ㉤ ~ ㉦	Same as above	Approved by 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 Committee of each college after thesis examiners have applied for an extension period
C. Fail	① If thesis results are unsatisfactory and reexamination is necessary once the thesis title and content have been changed) ② Other conditions that cannot be included in both A and B above	㉠ ~ ㉡	Quality of thesis content is not maintained throughout	

㉠ Submission of documents related to the thesis ㉡ Payment of thesis examination fees ㉢ Report on students whose theses are to be examined ㉤ Selection of academic advisor ㉤ Pre-arranged examination and final examination ㉦ Report on results of thesis examination ㉦ Theses submitted for storage

[Appendix 2]

Amount of Thesis Examination Fees to be Paid

Program	Amount of Fees per Student	Amount of Fees paid to each Member of Thesis Examination Committee		No. of Examiners
		Chair	Examiner	
Master's	KRW 100,000	KRW 38,000	KRW 31,000	3
Doctoral	KRW 300,000	KRW 80,000	KRW 55,000	5

☞ Based on the 2nd Meeting of the Graduate Studies Committee in 1994 (1994.3.24.)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시행 2023. 2. 23.]

[서울대학교학교지침, 2023. 2. 23.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팀, 02-880-5153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임과 동시에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이다. 선도적 연구기관을 구성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 뿐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탐구를 향한 원동력이며, 호기심으로 유발된 탐구는 우호적 환경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될 때 비로소 창의적 결과로 태어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회적 통념, 편견, 관습은 때로 새로운 탐구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때로 유발된 호기심이 창의적 연구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자에게는 유형, 무형의 구속이 없이 연구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연구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그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연구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한국이라는 지역 사회를 넘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그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국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함의를 갖는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다가오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학문과 기술 수준은 국가 능력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지식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학과 연구자 개인은 사회로부터 부단한 연구 경쟁과 연구능력의 평가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점차 확대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구결과물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는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행위규범을 요구한다. 본 연구윤리 지침은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요청에 미래지향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었다.

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류문화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한다.

제2조 (지도자로서의 책임) ①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지침을 포함한 윤리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교수는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가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연구경력 표현 시 지켜야 할 책임)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5조 (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술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제6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계획서, 학술지 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게재·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4호를 준용하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3.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4.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5.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6.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7.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8.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9.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3장 연구자료의 관리

제14조 (원칙) 연구데이터(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자료를 의미한다) 및 연구자료(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이차자료를 의미한다)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

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제15조 (연구데이터의 기록) ① 연구데이터는 연구의 독자성(originality)을 증명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므로, 연구노트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의 집합체로서, 연구자 자신 뿐 아니라 연구실 내의 지식의 전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위하여 제본된 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 연구노트에 준하는 기록인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는 연구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실험기기의 출력물 등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데이터는 노트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연구노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는 서울대학교의 소유에 속한다.

③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일은 작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정부 과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제2장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한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⑥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에 대해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이해상충

제17조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

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9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히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20조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인간 대상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③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23조 (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개량원칙 :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제2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대상 연구는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한다.
2.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학교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의 안전관리

제27조 (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학교 당국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들은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기준 및 서울대학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생물안전관리) ① 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미생물, 프리온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을 의미한다)을 이용하는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해당 연구시설을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을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①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 내장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구매·사용·폐기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을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자는 방사선장해 방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인화성물질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하되,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둔다.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게 분류·저장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30조 (서울대학교의 책무) ① 서울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 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 < > 란에 V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1.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등의 역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외부 연구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서울대학교가 본인의 소속 기관 또는 지원 기관(미성년자의 경우 입학 대학(해외 대학 포함) 또는 지원대학 포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제7조〉

제4조(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근거없이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

제5조(부당 연구성과사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4조제3호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연속된 5문장 또는 한 단락 이상)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게재·출간하는 행위

제6조(부당 저자표시) 고의로 기여도에 관한 판단권을 일탈·남용하여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배제하거나 기여도에 위반하여 저자 순서를 정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 위반행위)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제안 또는 허용하거나 공동으로 한 자는 해당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고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예비조사, 본조사 또는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행위
3. 보관 중인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삭제 등 훼손하는 행위
4.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연구참여자:

(서명)

【별표 2】

특수관계인 등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 < > 란에 V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발표논문명: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참여저자: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지명: - 논문명: - 논문 투고 예정일: - 참여저자:	

-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추진 단계별 기여 사항 기술 및 기여율 산출

연구추진 단계	기여 사항 기술	기여율(%)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종합		

※ 기여율: 각 단계별로 모든 공저자 중 특수관계인 등의 기여율을 기재하고, 종합 기여율은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알맞은 단계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기재

- 연구윤리 확인내용 (예시)

항목	내용 (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 등)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항목	내용 (예시)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위 내용은 논문의 모든 공저자에게 고지되었음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제1저자	제출 당사자	특수관계인 등
확인 서명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제정 2008. 11. 3.

개정 2014. 5.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연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

② 연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이라도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역할)** ① 총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노하우 제공 및 지식 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되,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기관명,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기록자명, 연구노트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각 장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과 기록일자, 점검일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7조(점검) ①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기록자의 연구노트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상위 연구자를 점검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연구노트는 협약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제9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작성일 부터 3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자에게 인계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연구노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및 반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 및 반출하지 않는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2008. 11. 3. 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은 본 지침 시행으로 폐지한다.